

해외 사회적경제 주요국 관련 제도 및 정책 조사 최종보고서

2023. 1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제 출 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귀하

본 보고서를 「해외 사회적경제 주요국 관련 제도 및 정책 조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사회연대경제연구소 주식회사

〈참가연구원〉

총괄 책임자 : 주 수 원

연구원 : 엄 형 식

연구원 : 인 성 환

본 보고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발주하고 사회연대경제연구소(주)가 수행한 「해외 사회적경제 주요국 관련 제도 및 정책 조사 용역」의 최종결과물로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01
2. 연구 개요	04
3. 조사 대상	06

2장. 사회적경제 동향

1. 사회적경제 개념 및 국제 동향	09
2. 국가별 사회적경제 개요	16
01. 프랑스	16
02. 이탈리아	19
03. 스페인	21
04. 룩셈부르크	23
05. 벨기에	25
06. 그리스	28
07. 영국	32
08. 덴마크	40
09. 멕시코	44
10. 에콰도르	48
11. 캐나다(퀘벡)	51

3장.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1. 재정지원 및 직접지원	59
2. 판로지원	63
3. 경영지원	66
4. 금융지원	68
5. 세제혜택 및 기타	74
6. 사회적가치	79

4장. 조사 결과

1. 조사결과 종합	91
2. 시사점	110

부록.

국가별 요약	115
--------------	-----

1장

해외 사회적경제 주요국 관련 제도 및 정책 조사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개요
3. 조사 대상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국제사회의 사회적경제 관심 대두

- 최근 몇 년간 기후 위기,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우려, 코로나19 이후 회복력에 대한 높은 관심 등으로 인해 사회적경제(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 높아짐
- 사회적경제는 공정무역, 순환경제와 같은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척하면서 난민 지원부터 주거 및 식량안보 문제까지 산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주목
- 특히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를 결집시키는 효과로 선진국 뿐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주요한 정책으로 부각
- EU는 2021년 12월, 'EU 사회적경제 실행계획'을 발표하며 사회적경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EU 전역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구체화
- OECD는 2022년 6월,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혁신 권고안'을 발표하며, OECD 가입 여부를 떠나 사회적경제 체계를 개발하고 채택할 것을 권고
- ILO 역시 2022년 6월,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 결의안'을 채택하여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기업, ILO 등의 역할을 명시
- UN은 2023년 4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하며 회원국들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도구로서 사회연대경제를 프레임워크로 활용하도록 장려

□ 국내 사회적경제의 환경 변화

- 국내 사회적경제의 역사는 100년이 넘지만, IMF 금융위기를 계기로 자활기업의 제도화와 2007년 사회적기업, 2010년 마을기업 제도화로 본격적으로 확장
- 이후,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난 10여년간 다양한 사회적경

제 관련 정책들이 시행되었고, 이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조직 등장
* 2022년 말 기준, 사회적경제기업 수 32,632개(5대 부문 기준)

- 사회적경제가 양적으로 확충되면서 최근 사회적가치와 ESG 등의 강조와 함께 사회적경제가 창출한 사회적가치에 대한 측정이 정책의 주요 관심으로 등장
- 지금까지 사회적경제 정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앞으로의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질적 성장, 가치 측정, 지역사회 기여 등이 핵심과제
- 따라서 최근 변화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국내 사회적경제의 핵심 과제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사회적경제의 지원 방향 정립 필요

2) 연구 목적

□ 사회적경제 정책의 변화 동향 파악

- 사회적경제 역사가 깊은 유럽 사회에서도 2000년대 이후부터 사회적경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정착
- 특히, 2008년 금융위기와 2012년 UN “세계 협동조합의 해”지정을 계기로 남미, 아시아 등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 및 정책 지원 확대
- 최근 10여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한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해외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국내 사회적경제 정책 평가를 위한 준거 마련

□ 사회적경제 정책 기초 마련

- 사회적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은 2014년 19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된 이후, 현 21대 국회까지 제정되지 못하며 표류중인 상황
-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UN의 ‘협동조합의 해’ 지정이 영향을 미친 것과 같이, 이번 UN의 사회연대경제 결의안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 큰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

- 해외 주요 국가의 사회적경제 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의 기초 마련
- 향후 사회적경제기본법 논의 단계에서 적절한 법적 접근방식과 정책수단 수립 등에 활용

2. 연구 개요

1) 연구 목표

□ 해외 주요국가의 사회적경제 정책사례 발굴

- 해외 주요 국가의 사회적경제 입법 현황 및 정책 수단, 정부지원과 민관협력 사례 등 수집
- 각국의 사회적경제 특징과 성장과정, 유형별 구성 등을 분석하고 각각의 기여를 검토하여 사회적경제의 의의 도출

□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 수립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방향 및 민관 협력을 위한 필요요소를 도출하여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에 활용
- 사회적경제에 대한 일부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사회적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 마련

2) 연구 프로세스

단계	연구 내용	세부 내용
1	문헌 검토	1.1 사회적경제 국가별 기초 현황 검토 1.2 사회적경제 정책 및 제도 조사대상 선정
2	자료 수집	2.1 주요 국가별 사회적경제 현황 조사 2.1.1 국가별 자료 분류 및 선정 2.1.2 해당 국가별 사회적경제 동향 및 흐름 분석 2.2 주요 국가별 사회적기업 관련 법·제도 및 지원 현황 조사 2.2.1 주요 지원제도 및 민관협력 사례조사 2.2.2 사회적가치 동향 조사
3	결론 도출	3.1 국가별 사례조사 시사점 도출 3.2 향후 활용방안 제시

3) 연구 기간 및 주요 내용

과업 내용	기간	2023년 09월				2023년 10월				2023년 11월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연구착수													
[문헌검토]													
국가별 기초현황 검토													
조사대상 선정													
[자료수집]													
국가별 사회적경제 동향 조사													
법제도 및 지원현황 조사													
[결론 도출]													
국가별 사례조사 시사점 도출													
향후 활용방안 제시													

3. 조사 대상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본법 유무, 사회적경제 주요 정책별 분류, 사회적경제의 발전 정도, 정보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10개국 선정

구분		국가	주요 특징	비고
1	유럽	프랑스	• 사회적경제의 규모가 크며 다양한 정책 시행중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2014)	
2		이탈리아	• 사회적경제의 역사가 깊고, 다양한 주체 활동 • 제3섹터 및 사회적경제 법제화(2016)	
3		스페인	• 사회적경제의 역사가 깊고, 다양한 주체 활동 •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2011)	
4		룩셈부르크	• 유럽 최초 연대기반경제 전담부서 설치 • 사회적임팩트기업 설립 법률 제정(2016)	
5		벨기에	• 협동조합운동의 오래된 역사 • 사회적목적기업 법률 제정(1996)	
6		그리스	• 사회연대경제법 제정(2016) • 유럽 내 사회적경제 최초 제도화(2011)	
7		영국	• 공동체이익회사 등 다양한 형태 사회적경제조직 활동 • 사회적경제 금융 지원 등 사회투자 정책 시행	
8		덴마크	• 복지국가 위기 속 사회적기업 흐름 등장 • 사회적기업 법률 제정(2014)	
9	중남미	멕시코	•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2012) • 농촌 및 시민사회단체, 자산화 관련 정책 활성화	
10		에콰도르	• 사회적경제 헌법에 명문화(2008) 및 기본법 제정 •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경제 정책 시행중	
11	기타	캐나다 (퀘벡)	• 비영리단체 및 공동체경제 분야 법제화 •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정책 활성화	지자체

2장

해외 사회적경제 주요국 관련 제도 및 정책 조사

사회적경제 동향

1. 사회적경제 개념 및 국제 동향
2. 국가별 사회적경제 개요
 01. 프랑스
 02. 이탈리아
 03. 스페인
 04. 룩셈부르크
 05. 벨기에
 06. 그리스
 07. 영국
 08. 덴마크
 09. 멕시코
 10. 에콰도르
 11. 캐나다(퀘벡)

1. 사회적경제 개념 및 국제 동향

1)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개념

□ 배경

- 2023년 4월, 유엔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Promot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사회연대경제를 공식적으로 인정
- 유엔 결의안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의를 재인용하면서 사회연대경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

“사회연대경제는 자발적 협동, 상부상조, 민주적이고 참여적 지배구조, 자율과 독립성, 잉여/이윤 및 자산의 배분과 사용에서 자본보다 사람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에 둔다는 원칙들에 바탕을 두고, 집합적이면서 일반적 이해에 복무하는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조직 및 다른 형태의 조직체를 포괄한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체들은 장기적 생존능력과 지속가능성, 비공식 경제에서 공식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며, 모든 경제 영역에서 작동한다. 이 조직체들은 자신들의 작동방식에 내재되어 있으면서, 사람과 지구에 대한 돌봄, 평등과 공정, 상호연결성, 자치, 투명성 및 책임성, 그리고 쾌락은 일자리와 삶의 질 달성에 조응하는 일련의 가치들을 실천에 옮긴다. 각국의 상황에 따라, 사회연대경제는 협동조합, 민간단체, 상호공조조합, 재단, 사회적기업, 자조그룹 및 사회연대경제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 작동하는 다른 조직체들을 포함한다 (ILO 결의안 5조)”.

- 유엔의 결의안은 1970년대 프랑스에서 처음 사용된 이래 각 국가별 다양하게 발전되어왔던 사회적경제 개념을 ‘사회연대경제’로 재정리하면서 혼란을 줄이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방향성 및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제시함
- 해외 사회적경제 주요국 관련 제도 및 정책 조사를 위해, 현재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및 유사 개념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사회의 변화 속에서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

- 현재적 의미의 사회적경제는 1977년 프랑스에서 개최한 콜로키움에서 처음 사용되면서 프랑스 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제도화되었고, 이후 프랑스어권인 캐나다 퀘벡과 벨기에 왈론으로 확산
- 1989년 벨기에 왈론 사회적경제 평의회(Conseil wallon de l'économie sociale)에서 조직적 형태와 운영 규범을 포괄하는 사회적경제 개념¹⁾을 공식 채택하면서, 캐나다 퀘벡, 스페인 등의 사회적경제 개념 정의에 기여.
- 1980년대 후반, 프랑스 정치인 자크 들로르(Jacques Delors)²⁾가 유럽공동체 집행위원장이 되면서 사회적경제 개념은 유럽공동체 차원으로 확산되었으며, 유럽집행위원회에 사회적경제 담당부서가 신설
- 이러한 전통 아래, 사회적경제는 유럽을 중심으로 주요하게 사용

□ 연대경제(Solidarity Economy)

- 연대경제는 프랑스에서 발전한 개념과 중남미에서 발전한 개념으로 구분됨
-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로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면서 풀뿌리 시민사회 및 사회복지사 등 활동가들이 신빈곤층에 대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실험을 전개하기 시작
- 이 과정에서 경제활동과 직업훈련을 병행하는 노동통합조직이 등장했고, 돌봄서비스, 근린서비스 등 지역사회 기반 활동들을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관계망의 구축'하는데 초점
- 1990년대에 이와 같은 지역사회 서비스 활동이 연대경제로 이론화되었고

1) 이 개념정의에 따르면 사회적경제는 “주요하게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지위의 조직들에 의해 수행되는 경제활동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조직들의 윤리는 이윤추구가 아닌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를 추구,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수익 배분에서 자본이 아닌 사람과 노동에 우선순위 부여라는 원칙을 따른다” 구성된다 (Defourny, 1992).

2) 자크 들로르는 유럽공동체의 요청으로 1979년 작성한 보고서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서 ‘제3섹터’를 제안한 바 있다 (Bidet, 1997). 사회적경제 개념이 공식화된 이후, 프랑스와 유럽에서 제3섹터는 국가 및 시장과 구별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동의어로 쓰이는 추세이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유럽공동체에서는 사회적경제라는 표현이 갖는 프랑스적 성격을 희석시키기 위해 제3섹터, 또는 제3시스템 등의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Amin et al., 2002).

(Eme and Laville, 1994), 이후 사회적경제와 결합하며 사회연대경제라는 통합적 개념으로 발전함

- 한편, 1990년대 후반 중남미에서는 비공식 경제를 포함하는 민중경제 개념의 연장으로서 연대경제의 개념을 활용
- 특히, 2003년 브라질에서 노동자당 집권 후 연대경제부가 설치되면서 노동자 협동조합 모델에 기반한 연대경제 조직들을 대대적으로 육성
- 이와 같이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과 중남미에서 등장한 연대경제 개념은 풀뿌리 대안 경제활동과 조직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하면서, 지역적으로 뿌리내리며 자본주의에 대해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공하는데 기여(Dash, 2013)

□ 사회연대경제(Social&Solidarity Economy)

- 1990년대 중반 이후, 프랑스 내에서 사회적경제와 연대경제 두 개념이 경쟁적 관계로 발전하면서, 두 흐름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필요성이 제기됨
- 2001년, 리피에츠 보고서에서 사회연대경제라는 명칭을 통해 활동의 목적(연대경제)과 조직 운영방식(사회적경제)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조직들로 제3섹터를 정의할 것을 제안하면서 사회연대경제 개념화(Lipietz, 2001)
- 이러한 사회적 논의를 기반으로 2014년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이 도입되면서 제도적 지위와 규범적 원칙을 함께 적용하는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법적 개념 정의가 도출됨
- 현재, 유럽연합 및 다른 유럽국가들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사회연대경제를 공식적 개념으로 사용
- 한편, 사회적경제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면서, 국제노동기구에서 이를 통합하는 명칭으로 사용해온 것도 사회연대경제 개념을 형성하는데 기여
- 국제노동기구(ILO)는 2000년대 이후 협동조합과 더불어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을 시민사회 조직으로 언급했으며, 2013년 유엔 사회연대경제 태스크 포스(UNTFSSSE) 기구 구성에 기여

- 이후 UNTFSSSE는 유엔 결의안 채택의 주요 기획 및 추진 주체로서 역할을 하면서 주요 국제기구의 결의안을 통해 사회연대경제를 개념화

□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 사회적기업 개념은 유럽과 미국이라는 각각 기원
- 유럽의 경우, 사회적기업은 복지국가가 더 이상 충족시키지 못하는 필요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대응으로 등장한 다양한 조직형태들을 개념화하기 위한 표현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도입
- 국가의 복지서비스 전달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사회서비스 전달에 관여하던 많은 민간조직들이 보조금과 회비, 기부를 넘어서서 시장자원 등 복합적인 자원동원을 시도
- 이 과정에서 민간단체들은 보다 시장활동에 의존하게 되고, 협동조합들은 조합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수요에 대응하게 되면서 사회적경제 내부에 새로운 역동성이 등장(Defourny, 2001).
- 새로운 역동성은 1990년대 이후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 프랑스의 노동통합조직, 벨기에 사회적목적 기업 등 새로운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법적지위를 통해 제도화됨
- EMES 연구네트워크에 의해 개념화되고 이론화된 이들 조직은 사회적기업이라 불리면서, 사회적경제의 보다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부분으로서 간주됨
- 사회적기업 개념의 또 다른 기원은 미국의 비영리-자선 부문
- 1980년대 이후 미국 비영리-자선 부문 조직들은 공공부문의 재원이 감소하면서 시장에서의 수익활동을 통해 자원 동원 필요성 대두
- 이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기법이 적극적으로 수용되면서 비영리-자선 목적을 위한 수익사업체들과 전문인력이 증가하였고, 이들은 각각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가로 불리게 됨
- 다른 한편으로 2000년대 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점차 중요해지

고, 진보적 성향의 기업가 및 투자기관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흐름 등장

- 기업의 지원을 통해 사회혁신과 사회적 임팩트를 목표로 하는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흐름이 벤처자선(venture philanthropy)이라는 명칭으로 등장(Dees and Anderson, 2006).
- 이들은 벤처 투자 기법을 사회적 영역에 도입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게 됨
- 유럽과 미국에서 기원한 두 개념은 사회적기업이라는 동일한 표현을 통해 상호 교류와 융합이 이루어지기도 함
- 그러나 유럽 개념에 기반한 사회적기업들이 광의의 사회연대경제 한 부분으로 간주
- 미국 개념의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가들은 CSR의 연장으로 간주되거나, 비영리성(영리추구 제한) 및 집합적이고 민주적 지배구조를 갖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회연대경제의 경계선 또는 그 외부에 위치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여겨지고 있음³⁾.

2) 사회적경제 제도화 경향

□ 배경

-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이 유사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게 발전
- 또한, 국가별로 비영리 부문을 사회연대경제에 포함시키거나, 비공식 경제를 포함시키기도 하면서, 사회적경제의 구성요소 및 개념 정의는 국가별로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남
-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국가별로 사회적경제가 제도화되는 단계에서 구분되는 특징을 드러냄

3)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경우, 사회연대경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포괄하여 사회적 임팩트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프레임을 “Pact for Impact”라는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추진하였으나 국내외 사회연대경제 운동들이 크게 호응하지 않으면서 동력을 상실한 바 있다.

□ 부문으로서 사회연대경제

- 부문으로서의 사회적경제는 사회연대경제라는 부문을 상정하고 이를 규정하는 기본법 성격의 제도를 도입한 경우
- 프랑스, 멕시코, 우르과이, 지부티(사회연대경제), 스페인, 캐나다 퀘벡, 포르투갈, 벨기에 왈론, 카메룬, 케이프 베르데 (사회적경제), 콜롬비아 (연대경제), 에콰도르 (민중연대경제), 온두라스 (경제의 사회적 부문) 등 사회연대경제의 실체와 전통이 잘 발전하고 사회적 인식 수준도 높은 국가들이 포함
- 주요하게 유럽 라틴권 국가, 남미 국가 및 일부 북아프리카 국가가 포함되며, 대부분 2010년 이후로 제도화 진행(ILO, 2020; Hiez, 2021).

□ 인증/라벨로서 사회연대경제

- 다른 경향은 사회연대경제를 여러 조직형태가 포괄되는 부문이 아닌, 특정한 조건 즉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유용성을 갖춘 조직들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하는 형태
- 이러한 경향은 주요하게 사회적기업 인증/라벨 제도를 통해 발전하였으며, 이후 사회연대경제라는 표현도 사용
- 사회연대경제 개념이 충분히 소개되지 않았던 반면, 사회적기업 개념이 광범위하게 수용되었던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에 관련 법제도가 주로 도입
-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인증과 유사한 형태이며, 이탈리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핀란드(사회적기업), 영국 (커뮤니티 이해 기업), 룩셈부르크 (사회적임팩트기업)가 대표적
-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튀니지의 경우 사회적경제/사회연대경제를 라벨의 명칭으로 사용 중 (Fici, 2020; ILO, 2020).

□ 특정한 새로운 제도적 지위

- 보다 실천적인 접근으로, 별도의 포괄적 제도를 도입하기보다 현존하고 있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제도체제에 새로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특정한 제도적 지위를 도입하는 경향

- 우리나라의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이 이탈리아, 폴란드, 체코, 그리스, 포르투갈, 우르과이 등에서도 사회적협동조합을 별도의 법인격으로 도입했고, 프랑스와 캐나다 퀘벡의 다중이해당사자 협동조합 등이 대표적
- 또한, 이윤배분 제약 없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의 지위가 미국 여러 주와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도입되기도 하지만, 이들 법적지위는 일반적으로는 사회연대경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2. 국가별 사회적경제 개요

1) 프랑스

□ 사회적경제 맥락⁴⁾

- 프랑스는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사회적경제관을 설치하여 사회적경제 용어를 전 세계에 알렸음
- 장기실업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사회 구성요소의 분산과 재편, 경제의 사회적 뿌리 회복이라는 가치를 걸고 사회적경제가 성장한 것은 1970년대 후반 부터였음
- 1977년에 상호공제조합 및 유사성격의 민간단체를 총괄하여 '사회적경제'라는 단어를 전세계 최초로 사용하였으며 1981년 사회적경제 대표부(Délégation à l'économie sociale)를 설치
- 1990년대 후반에는 사회적경제와 연대경제를 통합하여 사회연대경제로 지칭
- 1998년 '사회적배제 예방과 극복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사회적 기업 활성화의 기폭제 법으로, 사회적 기업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2011년에는 공동체이익협동조합회사법을 제정하여 사회적 기업의 새로운 법적 형태인 SCIC(société coopérative d'intérêt collective, 공동체이익협동조합)을 규정함.
- 2014년에는 사회연대경제법(Loi relative à l'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다양한 유형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을 포괄하는 공통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동시에 사회적경제기업의 법적 지위를 확정
- 이로 인해 사회적경제에 민간투자자들을 유인하는데 우호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사회연대경제 주체에 관한 정책을 일원화하며 사회연대경제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뒷받침함

4) 조상미, 김진숙, 강철희 (2011). 사회적 기업 정책특징 비교분석 연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8(2), 1-38

- 2017년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혁신 고등판무관이 신설되어 생태연대전환부로 바뀌었다가 2020년부터는 경제재정산업디지털주권부에서 하고 있음.
- 2018년 1월에 사회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French Impact가 출범하였고, 이를 통해 사회연대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생태학적 전환, 포용적이고 지속적인 경제발전, 세대 지원 및 지역 통합 등의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고자 함⁵⁾.

□ 사회적기업 현황

- 프랑스의 사회적경제기업은 2021년 기준 약 200,000개의 기업이 238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프랑스 GDP의 10%, 민간 일자리의 약 14%를 차지함⁶⁾
- ESUS의 경우 2019년 12월 기준 1,709개이며 조직형태로 보면 결사체(1,183개), 사회적기업(354개), 협동조합(164개), 재단(7개), 공제조합(2개)⁷⁾
- 프랑스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따라 법적 요건을 준수할 때,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로 진출할 수 있는 ESUS 라벨(Entreprise Solidaire d'Utilité Sociale, 공익사업 사회적기업)을 도입
- 경제재정산업디지털주권부에 사업자 및 회사 등록부, 3년치 회계 보고서, 요청된 승인 기간에 해당하는 회계연도의 예상 손익계산서, 회사의 증권이 금융 시장에 상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는 관리자의 증명서, ESUS 승인에 따른 급여 제한 준수 증명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⁸⁾.
-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나 승인요청 당시 설립된 지 3년 이내인 기업의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제한됨.
- 인증 대상은 노동통합기업, 임시고용통합기업, 중개민간단체, 노동통합 아틀리에와 작업장, 사회통합조직과 장애 아동·성인 지원센터(가족과 사회복지법), 아동 대상 사회복지서비스, 보호시설 및 사회재활센터, 지역관리기업, 직업적

5) <https://www.le-frenchimpact.fr/>

6) <https://www.economie.gouv.fr/economie-sociale-et-solidaire-ess>

7) 신재민(2021). 외국의 사회적경제법과 정부 정책- 프랑스 사회연대경제법과 정책을 중심으로 -. 사회적경제기본계획연구 포럼

8) <https://www.economie.gouv.fr/entreprises/agrement-entreprise-solidaire-utilite-sociale-ess>

응기업, 재택근무지원센터, 근로시설 및 근로지원 서비스, 공적 유용성이 인정된 민간단체 또는 재단, 장애 아동/성인 지원기관 등 다양

- 조직의 목적으로 취약 계층 또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가치 등을 추구하며 이를 회계상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ESUS 기업은 보수가 가장 높은 5명의 직원 또는 관리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을 포함한 평균 금액이 최저 임금의 7배로 설정된 연간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최저 임금의 10배로 설정된 연간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회사 주식이 금융 시장에서 거래되어서는 안됨⁹⁾

□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 사회적경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을 주도할 지역, 전국, 국가 차원의 민관 협치 기관으로 프랑스 사회연대경제 고등위원회와 프랑스 사회연대경제 회의소를 규정함.
- 또한 전국 민간대표조직으로서 ESS France를 신설하고 지역 민간대표조직으로서 사회연대경제 지역회의소(Chambres régionales de l'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CRESS)에 대해 인정함.
- 최소 2년마다 중앙·지방정부 관계자는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지역 회의를 조직하며, 여기에는 사회연대경제 지역회의소(CRESS) 회원, 사회적연대경제 대표자 및 네트워크가 파트너로 참석해야 함.
- 이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 정책의 지침, 자원 및 이행 결과에 대해 논의하며, 이는 사회연대경제를 위한 지역 공공정책 개발 제안 수립으로 연결됨(사회연대경제법 제8조)

9) <https://www.economie.gouv.fr/entreprises/agrement-entreprise-solidaire-utilite-sociale-ess>

2) 이탈리아

□ 사회적경제 맥락

- 이탈리아는 1970년대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노숙자, 약물의존자, 이주노동자등과 같은 신빈곤층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운동이 시작
- 초기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비롯해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공동생활과 공동노동을 하는 방식이었으나, 1980년대 후반 일부 지방정부가 이러한 조직에 사회서비스를 위탁하며 부분적으로 공적 자금의 활용이 시작됨¹⁰⁾
- 1991년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한 법률(381/1991)을 제정하였으며 2006년에 사회적기업에 관한 법률(Regulation of the Social Enterprise 155/2006)을 제정
- 동 법률은 사회적기업, 사회복지, 비영리적 생산 등의 정의에 관한 18개 조항으로 구성, 재무구조를 비롯하여 소유권 구조, 회계, 합병, 인수, 직무, 모니터링, 연구 활동 등에 관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2016년에 이어 2017년에 법령(Decreto legislativo 3 luglio 112/2017)이 개정됨.

□ 사회적기업 현황

- 사회적기업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사회적기업을 “비영리 기반으로 연대 및 사회적으로 유용한 목적을 위해 책임감 있고 투명한 경영 방식을 채택하고 직원, 사용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가 활동에 최대한 폭넓게 참여하는 것을 선호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규정
- 여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협회, 재단법인 외에도 주식회사가 포함되지만, 정관에 따라 회원 또는 관계자에게만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하는 1인 기업, 공공 행정기관 및 단체는 제외
- 사회적 목적 추구하고 관련해서는 보건, 교육, 환경보호, 문화유산개발, 이주민의 사회통합, 사회적농업 등 22개 사업 분야에서 매출의 70% 이상을 창출해

10) 타나카 나츠코(2014). 이탈리아 사회적경제의 지역전개. 아르케.(이성조 역)

야 하며, 취약계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를 30%이상 고용하는 조직은 사업 분야에 국한없이 자격 확보(동법 제2조).

- 운영과 관련해서는 직원, 이해관계자 등이 사회적기업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참여 구조를 만들어야 함(동법 제11조)
- '사회적기업'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나 문구는 사회적기업 이외의 단체에서 사용할 수 없음(동법 제6조).
- 사회적기업은 이익 및 잉여금을 본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구성원을 위한 배분은 해산시에도 금지되어 있음.
- 이사 및 직원에게도 유사한 직종의 임금보다 초과하는 개별보수를 지급할 수 없으며(동법 제3조), 사회적 기업 직원 간의 임금 차이는 연간 총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1 대 8의 비율을 초과 할 수 없음(동법 제12조).
- 사회적경제기업은 2017년 기준 102,000개 이상으로 추정되며, 유급 근로자 수는 약 90만 명, 연간 매출액은 42,700백만 유로
- 이탈리아 상공회의소의 기업 등록부 "L" 섹션에 등록된 사회적기업은 2013년 774개에서 2018년 1,693개로 증가¹¹⁾

□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 노동사회정책부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1년에 한 번 이상 하는데 이때 최소 최소 5개 이상의 다른 지역 또는 자치주의 기업 등록부에 등록된 1,000개 이상의 사회적 기업 회원으로 협회 활용 가능
- 사회적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의 형식, 내용 및 방식과 수수료가 정해져 있음(동법 제15조)

11) European Commission (2020) Social enterprises and their ecosystems in Europe. Updated country report: Italy. Author: Carlo Borzaga.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3) 스페인

□ 사회적경제 맥락

- 스페인에서는 19세기부터 ‘사회적경제’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기 시작
- 1978년 제정된 스페인 헌법 제129조 제2항에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공권력은 기업의 다양한 형태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적절한 법 제도를 통해 협동조합을 촉진한다. 또한 생산수단의 소유에 대해 노동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만드는 수단을 구축한다"고 규정
- 1992년에는 사회적경제기업연합(Spanish Social Economy Employers' Confederation, CEPES)이 결성되며 사회적경제라는 개념 하에 존재하는 다양한 경제적 활동을 하나로 묶어서 32개 조직을 통합 중
- 협회를 대표하는 주 또는 지역 연맹 등의 200개 이상의 지원 구조를 갖추고 있음¹²⁾
- 1990년대까지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는 협동조합에 맞춰져 있었으나, 2007년에 사회통합기업법(44/2007)이 통과되었으며 2011년에는 사회적 경제에 관한 법률(5/2011)이 제정됨

□ 사회적기업 현황

- 사회적경제기업연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스페인에 약 43,192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존재하며 GDP의 10%를 차지
- 직간접적 고용 창출 효과는 2,184,234명에 이르고 해당 부문과 관련된 인구는 약 21,625,063명에 달함¹³⁾
- 사회적기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지는 않고, 사회적포섭기업이 있으나 이는 명예퇴직자나 장기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1년 이내로 고용·교육하여 일반기업에 재취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사회적기업의 일반적인 정의와 다름¹⁴⁾

12) <https://www.cep.es/>

13) <https://www.cep.es/>

□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 중앙정부와 사회적경제 간의 협력, 조정 및 의사소통을 추구하는 기관인 사회적경제 진흥위원회(Consejo para el Fomento de la Economía Social)가 존재
- 자치단체별 사회적경제 정책이 추진되며 중앙정부는 사회적경제의 진흥 활동 전개에 필요한 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협동 체제를 추진(사회적경제법 제8조 제4항)
- 사회적경제 진흥위원회는 사회적경제의 부문별 주요 단체 및 대표적 노동조합을 대변하는 대표들과 노동이민부가 정한 사회적경제 영역의 저명인사 5명으로 구성되며 자문 및 협의체 역할을 하며 정부와 사회적 경제 간 협력, 조정 등을 담당(동법 제9조).

14) 라이프인(2020.5.20) 코로나19 위기에 스페인 사회적경제 분야의 대응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0439>

4) 룩셈부르크

□ 사회적경제 맥락

- 1970년대 후반 룩셈부르크에서 국가가 제공해야 할 사회 서비스(예: 고아원 및 양로원)를 제공하는 사회적 단체, 특히 협회의 활동을 통해 복지 운동이 등장
- 이후 1983년 ‘청년 실업자를 노동 시장에 재통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촉진하는 법’에 의해 노동통합기업이 등장함¹⁵⁾
- 2009년 유럽최초로 연대기반경제 전담 부서를 설치하였고 2013년에는 이를 노동고용사회연대경제부(Ministry of Labour, Employment and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MESS)로 승격하였음.
- 2013년에는 사회적 경제의 원칙과 가치를 대변하고, 알리고,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룩셈부르크 사회연대경제연합(Union luxembourgeoise de l'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ULESS)이 설립됨¹⁶⁾
- 2016년 사회적임팩트기업(Societal impact company , SIS)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법률(Loi du 12 décembre 2016 portant creation de la société d'impact societal¹⁷⁾)을 제정
- 이에 따라 경제활동, 이윤분배, 경영 및 사회적 목적 측면에서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사회연대경제로 정의

□ 사회적기업 현황

- 사회적경제의 원칙은 ①상품이나 서비스의 지속적인 생산, 유통 또는 교환 활동 수행, ②취약계층 지원 또는 사회적문제 해결, ③자율적 관리운영, ④이익의 50% 이상을 사회적 목적 활동 및 재투자 등(동법 제1조)
-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협동조합은 정관에

15) European Commission (2020) Social enterprises and their ecosystems in Europe. Updated country report: Luxembourg. Authors: David Hiez and Francesco Sarracino.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16) Sarracino, F. & Peroni, C.(2014) Assess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in Luxembourg.

17) <https://www.legilux.public.lu/eli/etat/leg/loi/2016/12/12/n1/jo>

서 사회적경제로서 목적을 정의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제공하면 사회적경제 담당 장관으로부터 사회적임팩트기업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음(동법 제3조)

- 사회적임팩트 기업의 주식은 임팩트 주식과 성과주식으로 구성되며 이 중 임팩트 주식은 회사가 창출한 이익에 대한 권리를 보유자에게 부여하지 않으며 이는 기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회책임투자회사의 활동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전액 재투자되어야 함.
- 성과 주식은 앞서 동법 제3조의 성과 지표에 의해 평가된 회사의 목표가 실제로 달성된 경우, 그 보유자에게 회사가 창출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자본금 중 항상 최소 50%는 임팩트 주식으로 구성되어야 함(동법 제4조).
- 직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최대 보수는 최저 사회적 임금의 6배에 해당하는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동법 제5조)
- 2020년 기준 사회적경제가 GNP의 0.8%이며 전체 고용의 4%를 차지하고 있으며 2,135개의 사회적경제 기업 중 1,627개가 비영리 조직으로 전체의 76.2%를 차지하고 있음¹⁸⁾.
- 2019년 7월 기준 31개 기업이 사회적임팩트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25개사는 2018년도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인증을 받았음¹⁹⁾

□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 노동고용사회연대경제부장관은 사회적경제 부문의 대표와 하나 이상의 연례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사회적경제 대표자들은 관련 부처와의 협력의 일환으로 목표를 수립하고, 사회적 경제 부문에 적용 가능한 모든 입법 및 규제 조항의 초안 또는 제안에 대해 해당 부문의 대표와 협의함²⁰⁾.

18) RRick Schmitz(2022). Regards 4/22 : Panorama en chiffres de l'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Statec

19) OECD (2022), Designing Legal Frameworks for Social Enterprises: Practical Guidance for Policy Makers,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LEED), OECD Publishing, Paris,

20) European Commission (2020) Social enterprises and their ecosystems in Europe. Updated country report: Luxembourg. Authors: David Hiez and Francesco Sarracino.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5) 벨기에

□ 사회적경제 맥락

- 벨기에에서는 19세기 중반 협동조합이 등장하며 농업, 제약, 소매점, 은행 및 보험 등의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발달
- 협동조합의 공식적인 합법성은 1873년에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지만, 다른 국가와 달리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규정한 규칙과 관행에 대한 준수는 법에 포함되지 않았음.
- 이 법은 협동조합을 유연한 자본과 유연한 조합원 자격을 가진 회사라는 매우 기본적인 정의만 제시하였고, 진정한 협동조합의 규칙과 가치에 부합하는지는 선택 사항으로 간주되어 1955년에 설립된 전국협동조합협의회(National Council for Co-operation, CNC)의 '인증' 절차를 통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었음.
- 이 결과 많은 조직(2016년 기준 약 3만 개)이 협동조합 형태를 채택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의 협동조합은 수백 개에 불과²¹⁾
- 2016년 브뤼셀-수도권지역(Brussels-Capital Region) 고용경제부 장관은 경제고용청과 협력하여 사회적기업 관련한 조례를 논의
- 이후 경제사회협의회, 사회적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의견을 교환했으며 사회적경제 연맹과 대표자들(Febisp, FeBIO, Tracé Brussel, SAW-B)을 한자리에 모아 4개월 간의 협의를 거쳤음.
- 2018년 5월과 6월에 현장의 주요 관계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초안이 2018년 7월 의회에서 표결되었고, 조례 시행령이 2018년 12월에 통과되었음²²⁾.
- 이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는 모든 유형의 법인에게 사회적기업 지위를

21) Huybrechts, B. (2016). La empresa social en Bélgica: diversidad de fuentes, modelos y campos. Revista de la Academia, 21.

22)

<https://betterentrepreneurship.eu/en/content/brussels-2018-ordinance-social-enterprises-belgium-inclusive-policy-making-process-co>

부여하는 사회적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Ordinance on the accreditation and support of social enterprises)가 제정

- 왈룬(Walloon)지방에서는 1990년 왈룬사회적경제위원회(CWES)의 사회적경제 개념을 정의했으며 2008년 왈룬지방정부의 '사회경제기본법'에 다음과 같은 원칙을 명기함.²³⁾

- ① 구성원이나 공공을 위한 목표를 가짐
- ② 경영의 자율성 보장
- ③ 민주적 의사결정
- ④ 자본 대신 사람을 중심으로 해 수익분배 등

□ 사회적기업 현황

- 1996년 기업 모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목적 기업(les sociétés à finalité sociale, SFS)'이 법으로 도입
- 모든 유형의 기업이 "구성원의 부유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몇 가지 조건을 준수하기만 하면 '사회적 목적 기업'이라는 명칭 사용 가능
- 그러나 많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사회적 목적 기업'이라는 법적 형태를 사용하지 않고 협동조합 조직을 채택하거나 영리 사업 형태를 채택하며 발전해 온 경우들도 있음²⁴⁾
- 사회적 목적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준수해야 함
 - ① 제한된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전혀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야 함,
 - ② 명확한 사회적 목표. 단 주요 목표가 구성원에게 간접적인 재정적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어서는 안됨,
 - ③ 법령 및 준비금 구성 방식을 고려하여 조직의 내부 및 외부 특성에 따라 이익이 어떤 방식으로 충당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함.

23) 더퍼블릭뉴스(2015).벨기에 왈룬지방의 '레뚜르니에르'와 '테르', 제도 뛰어넘은 주민중심 주거·일자리복지 <https://www.thepub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00>

24) Huybrechts, B. (2016). La empresa social en Bélgica: diversidad de fuentes, modelos y campos. Revista de la Academia, 21.

- ④ 조직의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연례 보고서 (본격적인 사회적 영향 보고서는 아님)를 발행하고, 보고서에는 투자, 운영비, 임금 관련 지출이 조직의 사회적 목표를 촉진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해야 함.
 - ⑤ 누구도 대표 주식에 연결된 투표권의 10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조직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 비율은 조직이 직원으로 고용한 직원이 한 명 이상인 경우 20분의 1임.
 - ⑥ 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직접적인 자본 이익은 국가협력위원회 설립을 규제하는 법률에서 정한 이자율보다 높을 수 없으며, 실제로 지급된 출자금액에 적용함.
 - ⑦ 청산의 경우, 모든 부채가 충족되고 조합원이 자본금을 상환 한 후 잉여금은 회사의 사회적 목적에 가능한 한 가까운 목적에 배분해야 함.
 - ⑧ 각 직원이 주식 소유를 통해 회사 지배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함²⁵⁾
- 2013년 기준 벨기에서는 16,710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367,664을 고용하고 있으며, 기업 수에서는 전체의 7.5%이며 고용 측면에서는 민간 고용의 16.6%, 전체 고용(민간 및 공공)의 11.8%를 차지
 - 지역으로 보면 고용 측면에서 왈론(19.5%), 플랑드르(14.8%), 브뤼셀(14.4%)임. 사회적경제 기업은 6가지 법적 형태로 나눌 수 있으며 90%가 비영리 협회(A(i)SBL)이며 나머지 10%는 공제회(3.6%), 재단(2.5%), 사회적 목적 기업(2.5%), 전국협동조합협의회가 승인한 협동조합(1.4%)으로 나뉨.
 - 사회적 목적 기업은 대략 400여개에 불과²⁶⁾

□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 왈론(Walloon)지방에서는 1986년 사회적 대화기구로 ‘왈론 사회적경제위원회(Conseil Wallon del’ Economie Sociale)가 구성

25) Huybrechts, B. (2016). Social enterprises and their eco-systems: A European mapping report. Updated country report: Belgium.

26) Rijpens, J., & Mertens de Wilmars, S. (2015). Baromètre des Entreprises Sociales en Belgique-Edition 2015.

6) 그리스

□ 사회적경제 맥락

- 그리스는 1914년 정부 주도로 협동조합 법을 제정하면서, 농업분야에 많은 협동조합이 설립됨
- 1930년대 초에는 3,000개가 넘는 1차 협동조합과 85개의 2차 협동조합이 있었으며, 1936년 이오아니스 메타사스 독재 정권이 출범한 이후 정권의 정치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협동조합 운동과 활동에 대한 간섭이 심해짐.
- 독일-이탈리아-불가리아의 그리스 점령이 끝난 후 1967년부터 협동조합이 다시 발전하였으나 다시 독재정권이 시작되어 1974년까지 한계가 있었음.
- 1979년 그리스는 단일 협동조합법을 포기하고 다양한 병행법 체제를 도입하여 최초의 농업협동조합법을 승인했으며, 1981년에는 협동조합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음.
- 이로 인해 농업 협동조합은 지도자 선출과 관련하여 정치 세력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고, 협동조합이 정치화되면서 협동조합연합회는 'PASEGES', 'GESASE', 'SYDASE' 등 3개로 나뉘짐²⁷⁾
- 그리스 헌법 제12조에는 협동조합에 대해 “공동의 이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농업 지역 또는 기타 부를 생산하는 원천의 공동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강제 협동조합의 설립은 모든 참여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조건 하에 법률에 의해 허용된다”라고 규정
- 2008년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재정긴축 기조 하의 그리스는 생산적인 국가 경제 재건과 지속가능한 경제로서의 전환을 위한 장치로서 사회적 경제를 최초로 제도화하면서, 2011년 4019/2011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가 정신 및 기타 조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2016년에는 그리스 의회에서 기존 법의 약점과 모호성, 과도한 관료주의, 국

27) Nasioulas, I. (2012). Social Cooperatives in Greece Introducing New Forms of Social Economy and Entrepreneurship, *International Review of Social Research*, 2(2), 151-171.
CICOPA(2013). Promoting cooperatives and the Social Economy in Greece

가 및 지방 정부에 대한 의존성, 설문조사 및 보고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연대경제법²⁸⁾(*NOMOS* 4430/2016: *Κοινωνική και Αλληλεγγύη Οικονομία και Ανάπτυξη των Φορέων της και άλλες διατάξεις*)이 제정

- 동 법률의 목적은 제1조에서 “경제 활동의 대안적 조직 형태로서 사회연대경제를 위한 입법 체계를 마련하여 모든 경제 활동 부문에서 사회연대경제를 확산시키고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지원하고 강화하며 사회연대경제기관의 설립, 운영 및 행정감독을 규정할 것으로 정의”함.
- 2조에서 사회적경제를 “민주주의, 평등, 연대, 협력, 사람과 환경에 대한 존중의 원칙을 바탕으로 생산, 분배, 소비, 재투자 관계의 대안적 조직 형태를 기반으로 하는 일련의 경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 현황

- 기존에 여성 협동조합(법 921/1979), 시민 협동조합(법 1667/1986), 신용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은행(법 2076/1992), 유한책임 사회적 협동조합(법 2716/1999, 12조), 농업 협동조합(법 4384/2016), 산림 협동 조직(법 4434/2016), 에너지 공동체(법 4513/2018) 등이 있었음²⁹⁾.
- 사회연대경제법은 사회연대경제 주체의 법인격 유형을 기본적으로 3가지로 하며 그리스 사회연대경제의 기본 골격을 만듦.
 - ① 사회적협동조합기업(Koin.S.Ep)(제14조~제23조)
 - ② 유한책임 사회적협동조합(KoiSPE)³⁰⁾
 - ③ 종업원협동조합(Koi.S.P.E)(제24조~제33조) 등
- 동시에 사회연대경제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동 법률은 일정한 기준(예. 민주적 의사결정 및 이익 배분)을 충족하는 기타 유형의 법인도 사회연대경제 주체로 인정하고 있음.

28) <https://www.taxheaven.gr/law/4430/2016>

29) Adam, S. (2019). Legal provisions for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actors. the case of law 4430/2016 in Greece. *International Journal of Cooperative Law*, 2, 97-110.

30) 법률 2716/1999에 근거하여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노동통합 사회적경제기업임

- 국가는 사회적경제 특임장관직을 신설하고 특정기준에 부합하는 법인을 사회연대경제 등록센터(National Registry of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에 등록하도록 하였음(동법 제4조).
- 2011년 전에는 6만여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있었으나 2011년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가 정신 및 기타 조항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사회적 경제 단체의 등록을 제한하여 2015년에는 907개 단체만 등록됨.
- 2019년 6월 사회연대경제 등록센터에 등록된 법인은 1,464개이며, 평균 17.7명을 고용하고 있음³¹⁾.

□ 사회적기업 지원체제

- 최소 10개 이상의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모여 ‘사회연대경제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협회는 상업적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그 목적은 회원들의 공동 및 사회적 이익 활동을 촉진하고 전파하며 사회연대경제의 원칙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제한
- 각 협회는 대표 역할, 지원 및 보호, 교육 및 훈련, 자문 서비스, 재정, 법률 및 기술 지원, 감사, 분쟁 해결, 새로운 사회연대경제 단체의 설립 또는 기존 단체의 발전 지원 등의 활동을 함(제9조).
- 노동·사회보장 및 사회연대부 내에 ‘사회연대경제 국가위원회’를 설치함.
- 위원회는 노동·사회보장 및 사회연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통계청장, 지방자치 단체 중앙 연합(K.E.DE), 지역 연합(En.P.E.) 대표, 전국 장애인 연맹(E.S.A.M.) 대표, OAED 국장, 노동자 총연맹(G.S.E.E.) 대표, 총장총회 회장, 범헬레닉 사회적협동조합 제한적 책임 연맹(P.O.KOIS.P.E.), 각 사회연대경제조직협회 대표 등이 참석
- 위원회의 역할은 사회연대경제 활동의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고 사회연대경제 국가계획의 개정, 구체화 및 이행에 대한 의견을 제시(제12조)

31) Λιαρχόβας, Π., & Αποστολόπουλος, Ν. (2020). Κοινωνική Οικονομία στην Ελλάδα: Συγκλίσεις και Αποκλίσεις με την ΕΕ.

- ‘사회연대경제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노동·사회보장 및 사회연대부, 경제개발관광부, 내무부 및 행정재건부, 재무부, 농촌개발식품부, 교육부, 평생학습 및 종교부, 환경에너지부, 보건부, 법무부 등의 부처에서 대표자와 대리인을 포함
- 위원회는 노동·사회보장 및 사회연대부가 준비하고 시행하는 사회연대경제 국가 전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의견, 사회연대경제 국가전략의 이행에 대한 평가 및 감독, 노동·사회보장 및 사회연대부 장관 및 관련 장관에게 사회연대경제 국가전략의 이행 촉진에 관한 연구 및 프로그램 준비에 대한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함(제13조)
- 노동·사회보장 및 사회연대부에는 사회적 경제를 담당하는 장관 직속의 사회연대경제 특별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음.
- 특별 사무국의 주요 임무는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단기및중기 정책의 개발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정부 정책을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수립, 시행, 집행하는 것(제36조)이며, 사무국 내에 사회연대경제 특별 비서관이 있음(제37조)

7) 영국

□ 사회적경제 맥락

- 영국의 사회적기업의 기원은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소규모 공동체나 자원봉사가 중심이었던 17세기 민간의 자선 및 박애주의에서 시작³²⁾
- 1793년 영국은 우애조합법(Friendly Society Act)을 제정하면서 질병·노령·질환의 위험에 처한 노동자들이 상호 지원과 부양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호금융과 장례비를 제공하는 우애(공제)조합을 활성화
- 우애조합이 활성화된 후, 1852년 우애조합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조합명의로 부동산 소유와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도 허용하는 산업공제조합법(Industrial and Provident Societies Act) 제정
- 1980년대 영국 정부의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분권화가 지속되면서 지역사회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사회적기업이 부상
- 2005년 공동체이익회사법(The Community Interest Company Regulation)을 제정하면서, 비영리기관들에게 상법상 지위를 부여하고, 주식발행 및 수익배분을 허용하고, 지역사회개발 투자유치 지원
- 공동체이익회사는 주주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의 편익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새로운 유형의 유한책임회사
- 공동체이익회사는 조직구조(지역협동조합 또는 1인 회사)와 지배구조(보증책임, 유한책임) 측면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음
- 2010년 빅 소사이어티(Big Society) 정책³³⁾이 시행되면서, 영국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사회적기업 자체보다는 지방분권 및 공공서비스 개혁과 연결되어 추진
- 영국의 사회적기업은 공익협회(Community Benefit Society), 공동체협동조합

32) 이철선 외 (2022). 복지국가와 사회적경제의 조응형태에 대한 국제 비교연구-사회적경제조직 유형에 따른 정부 지원방식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3) 데이빗 카메론 정부의 지방이양 정책의 일환으로 커뮤니티와 관련 단체 및 조직에 더 큰 권한을 이양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커뮤니티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정책

(Community Cooperative Society) 또는 보증유한책임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와 같은 법인격 선택 가능

표 1. 영국 사회적기업 법적 형태에 따른 특징

구분	CIC (공동체이익회사)	CLG (보증제한회사)	CLS (유한책임회사)
사회적목적	• 정관에 명시 • 사회적목적 및 지역사회 이익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명시 필요	• 자선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별도 규정 없음	• 별도 규정 없음
소유/배당	• 배당 금지(CLG) • 이익의 35% 이하 (CLS) • 자산양도 제한	• 배당 없음(자본금 없음) • 자선단체인 경우 자산 양도 제한	• 배당 제한 없음 • 자산양도 제한 없음
의사결정	• 이해관계자 참여	• 다양한 의결권 허용	• 주당 1표
법률	• 2005년 공동체이익회사법 및 회사법	• 2006년 회사법 • 정보제출 의무	• 2006년 회사법
특징	지역사회 이익 목적	자선단체가 주로 채택	본질적으로 영리 회사 자선단체 지위획득 불가

34)

□ 사회적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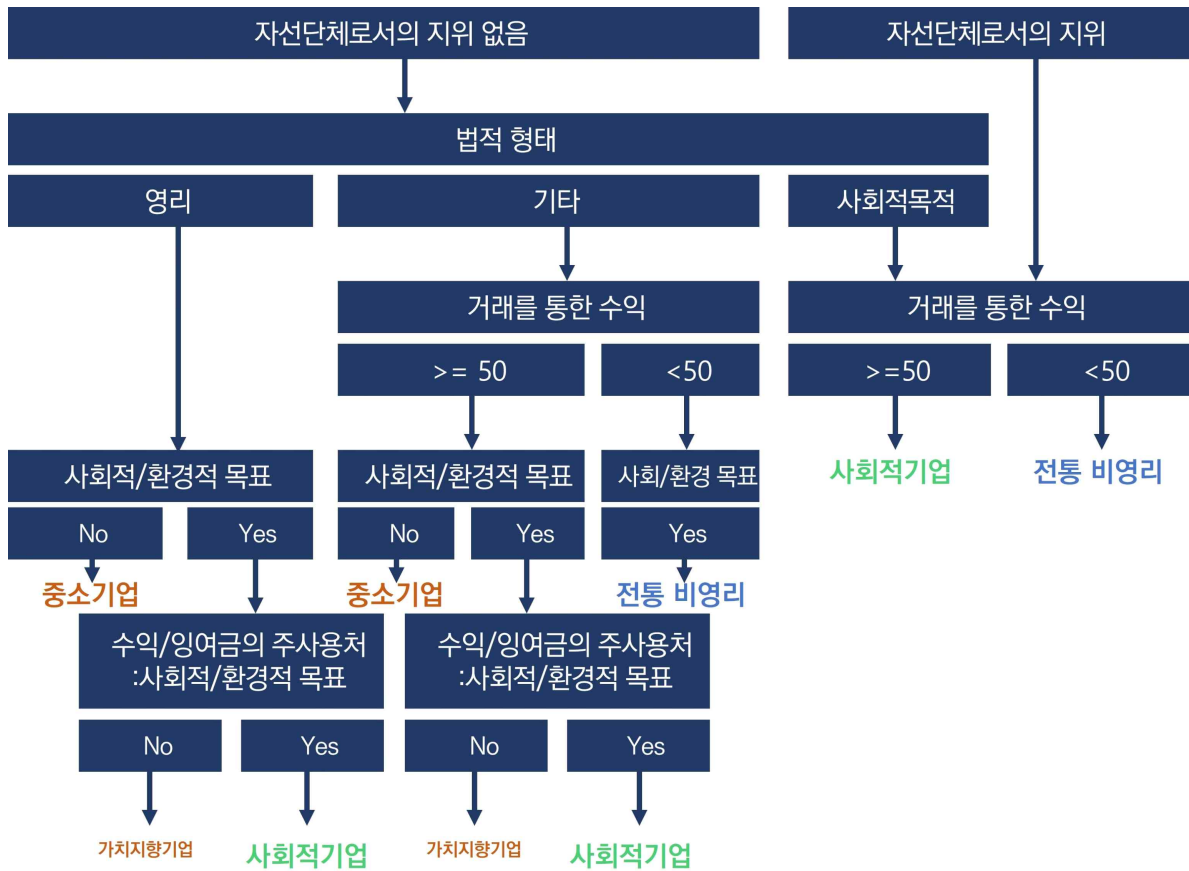
- 영국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서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DCMS)는 사회적기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³⁵⁾
- “ 사회적 사명(사회 및 환경 개발 목표)을 가지고 있으며, 연간 수입의 50% 이상을 거래에서 얻고, 주로 연간 잉여금의 50% 이상을 사회적 사명에 재투자하는 다양한 조직 형태”

34)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5a829f6c40f0b6230269bd60/Overview_of_the_various_legal_forms_and_some_of_their_important_characteristics.pdf

35)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2021.4). Social Enterprise: Market Trends 2019, Centre for Enterprise and Economic Development Research

그림 1. 영국 DCMS의 사회적기업 판단기준



- ① 전통 비영리 : 자선단체와 같이 연간 수입의 50% 미만을 거래를 통해 확보
 - ② 가치지향기업 : 사회적 미션은 갖고 있지만, 잉여금의 50%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지 않는 기업
 - ③ 중소기업 : 명시적인 사회적 목적을 갖고 있지 않은 기업
- ※ DCMS의 사회적기업 정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적 형태를 가진 ‘미션 주도형’ 또는 목적형 기업을 포함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정의³⁶⁾

○ 위 정의에 따른 영국의 사회적기업은 2019년 기준, 약 456,418개가 존재하며, 임금근로자를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은 약 131,290개³⁷⁾

36) 영국 사회적기업 협회인 SEUK가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스스로 사회적기업이라고 정의하는 조직이 포함되며, 자산 및 이익 분배의 제한을 포함하는 경우가 다수

37)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2021.4). Social Enterprise: Market Trends 2019, Centre for Enterprise and Economic Development Research

표 2. 영국 DCMS의 사회적기업 판단기준에 따른 사회적기업 규모

(단위: 개, %)

구 분	일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일반 중소기업 대비 비중
전체	5,660,000	456,418	8.1
고용유지 기업	1,382,000	131,290	9.5
비고용 기업	4,278,000	325,128	7.6
극소기업(1~9명)	1,137,000	101,193	8.9
소기업(10~49명)	210,000	25,620	12.2
중기업(50~249명)	35,000	4,305	12.3

- 영국 사회적기업 법인격은 개인유한책임회사가 48.6%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보증책임회사(13.8%)와 개인기업(12.6%), 공동체이익회사(9.5%)순

표 3. 영국 DCMS의 사회적기업 판단기준에 따른 사회적기업 법인격 형태

구 분	일반 중소기업(n=6,950)	사회적기업(n=945)
개인유한책임회사	72.8%	48.6%
개인기업	14.1%	12.6%
합자회사	7.8%	7.5%
보증책임회사	2.2%	13.8%
유한책임회사	1.2%	5.1%
자선단체	-	2.0%
공동체 이익회사	0.9%	9.5%
기타	0.8%	0.8%

- 자금조달 수단의 경우, 은행 대출이 30.8%로 가장 많고, 보조금(30.1%), 은행 당좌어음(19.2%) 순

표 4. 영국 DCMS의 사회적기업 판단기준에 따른 사회적기업 자금 조달 수단

구 분	일반 중소기업(n=1,043)	사회적기업(n=119)
은행 대출	39.6%	30.8%
은행 당좌어음	41.4%	19.2%
임대/할부구매	23.1%	11.1%
보조금	5.1%	30.1%
개인 차입금	5.9%	-
기업 차입금	7.3%	-
신용카드 자금	15.4%	7.7%
P2P	7%	3.8%
기타	6.4%	11.5%

- 한편, EU의 자체 연구³⁸⁾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영국에서 EU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은 최소 30,753개가 있다고 추정

표 5. EU의 기준에 따른 영국 내 최소 사회적기업 추정치

법적 형태	최소 예상 수
자선단체 / 보증책임회사(GLC)	19,503
공동체 이익회사(CIC)	6,930
협회 등	4,320
합 계	30,753

- 영국 공동체이익회사 감독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339개의 CIC가 신규로 등록되었으며, 2022년 기준 26,000개의 CIC가 등록되어 있다고 명시³⁹⁾

□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 영국은 정부가 인증하는 사회적기업 인증체계는 없으며, 민간 기업에서 사회

38) European Commission (2019) Social enterprises and their ecosystems in Europe. Updated country report: United Kingdom. Fergus Lyon, Bianca Stumbitz, Ian Vickers.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39) The Office of the Regulator of Community Interest Companies, 'Regulator of Community Interest Companies Annual Report 2021/22'

적기업 별도 인증(유료)⁴⁰⁾

- CIC의 경우에만 별도로 공동체이익회사 감독국(Community Interest Regulator)이 주관하는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공동체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로 등록 가능
- 감독국은 평가를 통하여 신청기업의 목적이 “합리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나 사회 전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
- 감독국은 CIC의 신규 및 갱신 자격심사를 주관하고 “최소규제 원칙” 및 CIC 관련 자문을 통하여 CIC의 성장을 지원하며, CIC는 연례 보고서를 일반에게 공개
- 영국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의 유형은 정부사업 위탁형, 정부주도 기관형, 민간주도 연합형, 민간주도 전문형 4가지 형태로 분류⁴¹⁾
- 정부사업 위탁형의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형태의 중간지원기관들로 Locallity(자산이전 컨설팅), Community Link(창업지원), Social Investment Bank(창업자금 지원) 등
- 정부 주도 기관형은 노동자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위해 설립한 협동조합 개발기관(Cooperative Development Agency)
- 민간 주도 연합형은 사회적경제 관련 연합회로 영국 사회적기업협의회(Social Enterprise UK), 영국 협동조합 연합회 등
- 마지막으로 민간주도 전문형은 주택·금융, 교육, 농촌,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협동조합들을 개발·설립·지원하는 섹터 개발기구
- EU에 따르면 영국 사회적기업 생태계의 주요 주체 및 역할은 다음과 같음⁴²⁾

40) <https://www.socialenterprisemark.org.uk/>

41) 이철선, 박세경, 권소일. (201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 3: 사회서비스 산업-제3섹터-고용창출 연계모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2) European Commission (2019) Social enterprises and their ecosystems in Europe. Updated country report: United Kingdom. Fergus Lyon, Bianca Stumbitz, Ian Vickers.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표 6. 영국 사회적기업 생태계 주요 주체 및 역할

역할 / 기능	주요 주체
정책 및 법 체계, 규제	▶ 중앙부처 :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및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 부서(DCMS), 시민사회부서, 기타 정부부처와 협력* ▶ 지역 및 지방정부 ▶ 공공조달 관련 : 크라운 커머셜 서비스(CCS)
인증 시스템 및 마크	▶ Social Enterprise Mark company(CIC) ▶ Social Enterprise UK
금융 중개	▶ Big Issue Invest, Big Lottery Fund, Big Society Capital, Bridges Fund Management, CAF Venturesome, CDFA on behalf of all CDFIs, City Bridge Trust (City of London Corporation), ClearlySo, Esmee Fairburn Foundation, Key Fund, Social Finance UK, Social and Sustainable, Capital (SASC), SIB Group, UnLtd, Major banks (e.g. RBS)
스타트업 지원 및 시설(인큐베이팅 등)	▶ 사회적기업가 학교, UnLtd - 기타 사회적기업 지원 네트워크
비즈니스 개발 지원	▶ 커뮤니티 액션 네트워크(CAN), 협동조합 영국, SEUK, UnLtd, 플런켓 재단 등
학습 및 교류 플랫폼 촉진	▶ RBS 100SE 지수, Inspire2Enterprise, Power to Change
지원 네트워크 및 협회	▶ SEUK, 영국신용조합협회(ABCUL). 커뮤니티 액션 네트워크, CIC협회 등

* 2023년, BEIS는 에너지 보안-탄소제로 부서(DESNZ), 과학-혁신-기술 부서(DSIT), 경영과 무역 부서(DBT)로 개편되었으며, DCMS는 자선단체 관련 업무만 명시됨

** 현재 CIC 및 사회적기업 관련 업무는 Office of the Regulator of Community Interest Companies에서만 확인 가능⁴³⁾

43)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office-of-the-regulator-of-community-interest-companies>

- 영국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은 2010년 이후 사회적기업 자체에 대한 지원보다 영국이 직면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사회적기업을 연결하는 형태로 변경⁴⁴⁾
- 이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은 지역 권한의 주체로서, 공공서비스 전달자로서 지역사회에서 역할 확보
- 이러한 흐름에서 지역주권법, 사회적가치법, 공공서비스 상호조합 지원, 지역분권 정책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고, 사회적기업은 해당 정책의 참여자로 위상이 변화

44) 이철선 외 (2022). 복지국가와 사회적경제의 조형형태에 대한 국제 비교연구-사회적경제조직 유형에 따른 정부 지원방식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 덴마크

□ 사회적경제 맥락⁴⁵⁾

- 덴마크의 사회적기업은 1800년대 중후반의 농민 및 노동자의 협동조합 운동과 수십년 후에 등장한 자발적 결사체 및 비영리단체에서부터 시작
- 1960년대 후반, 복지국가의 등장과 함께 협동조합 운동이나 전통적인 제3섹터 영역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법인 조직에 대한 관심 대두
- 1980년대 후반, 덴마크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에서 사회 정의를 증진하고, 소외된 시민과 지역사회의 삶을 개선하는데 참여한 사회활동가들을 ‘사회적기업가’라고 명칭
- 특히 ‘사회 개발 프로그램’은 시민사회에 대한 공공지원(4년간 약 4,700만 유로)을 통해 사회 활동가들에게 공공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활동을 국가의 영역과 분리한 것으로 사회적기업 설립의 계기로 작용
- 2000년 이후, 사회적기업 개념이 대중적 관심과 영향력을 확보하게 되면서, 공공 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 지원 기관이 설립
- 덴마크 의회의 보조금을 기반으로 2006년에 로스킬데 대학에 사회적기업가 정신 센터가 설립되었고, 2007년에는 덴마크 협동조합 고용주 조직(Danish Cooperative Employers’ Organisation)에 사회적기업 센터가 설립
- 2010년 민간 싱크탱크인 만다그 모르겐(Mandag Morgen)이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위한 국가 전략(The National Strategy for Social Entrepreneurship)을 제안하였고, 2012년 덴마크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국가적 의제로 배치
- 2014년, ‘등록 사회적기업에 관한 법률(Act on Registered Social Enterprises) 제711/2014’을 제정하면서 등록된 사회적기업(RSV)의 지위를 명시.

45) European Commission (2019) Social enterprises and their ecosystems in Europe. Updated country report: Denmark. Authors: Lars Hulgård and Lisa Chodorkoff.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사회적기업 현황

- 덴마크는 사회적기업 등록제도(Registreret Socialøkonomisk Virksomhed)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함
“사회적 기업은 비상장 기업이며 비즈니스와 수익을 통해 구체적인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⁴⁶⁾
- 2021년 7월 기준 RSV 도구를 통해 등록한 사회적기업은 798개⁴⁷⁾
- 덴마크 또는 EU 소재 법인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5가지 요건 충족 필요⁴⁸⁾

표 7. RSV 등록 요건

구분	주요 내용
사회적 목적	기업은 사회적·문화적·고용·건강 관련 및 환경적 목표를 추구하며, 사회에 유익한 주된 목적 보유
중요한 상업 활동	기업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며 이 활동은 기업 수익의 중요한 요소를 구성해야 함
독립성	기업의 관리 또는 운영에 공공기관이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함
포용적이고 책임감있는 거버넌스	기업은 직원, 고객,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를 거버넌스에 참여
이익의 사회적 관리	발생 이익은 회사에 재투자 하거나, 타 사회적기업에 투자 및 비영리 기관에 기부해야 함(단, 세후 이익의 최대 35% 배당 가능)

- RSV로 등록될 경우, 사회적기업 플랫폼에 등록되며, 사회적기업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금을 모금하거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협회의 경우 세금 면제, 재단은 세금 유예, 유한책임회사는 세제혜택 없음)

46) European Commission (2019) Social enterprises and their ecosystems in Europe. Updated country report: Denmark. Authors: Lars Hulgård and Lisa Chodorkoff.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47) <https://betterentrepreneurship.eu/es/content/registration-tool-social-enterprises-unleashing-potential-social-enterprises-through>

48) <https://www.retsinformation.dk/eli/lta/2014/711>

- 또한, RSV에 등록할 경우 지자체 내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사회주택 내 상업공간 임대료 할인 가능
- RSV로 등록한 사회적기업은 경영 관련 주요 사항을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
- RSV로 등록한 사회적기업의 법적 형태는 협회, 재단, 유한책임회사 형태이며, 협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사회적기업 지원체계⁴⁹⁾

- 덴마크의 사회적기업 지원 체계는 크게 3단계의 변화 과정을 거침
- 2007년부터 2013년까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민간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 생태계가 형성
-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제도화 단계로 사회적기업을 위한 국가성장센터(Vækstcenter)가 설립되고, 위원회(Rådet for social økonomiske virksomheder)가 설립되어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위한 공공 지원체계 마련
- 2015년, 국가성장센터 및 위원회가 모두 종료되면서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은 비즈니스 부서가 맡게 되었고, 사회적 책임과 성장에 관한 대화 포럼(Dialogforum for Samfundsansvar og Vækst)이라는 준 공식 기구에서 부분적으로 사회적기업 지원
- 2015년 이후 중앙정부의 공공 지원이 감소하면서, 각 지자체별로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원 생태계 마련

49) European Commission (2019) Social enterprises and their ecosystems in Europe. Updated country report: Denmark. Authors: Lars Hulgård and Lisa Chodorkoff.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표 8. 덴마크 사회적기업 생태계 주요 주체 및 역할

역할 / 기능	주요 주체
정책 및 법 체계, 규제	▶ 중앙부처 - 국립 사회적기업 센터(2015년 폐쇄) - 사회적기업 위원회(2015년 종료) - 사회적책임과 성장 대화포럼 - 국립 사회서비스 위원회 - 비즈니스 및 성장 부서 ▶ 지역 및 지방정부
인증 및 등록	▶ RSV 등록 도구
교육 및 훈련	▶ 로스킬데 대학교 사회적기업가센터(CSE) 및 코펜하겐 비즈니스 스쿨 주요 대학 ▶ SED(Sociale Entreprenører i Danmark) (덴마크 사회적기업 협회)
창업지원	▶ Kooperationen(협동조합 협의회), SED 및 재단법인 등
비즈니스 지원	▶ 사회적성장 프로그램 (Social+/ Socialt Udviklingscenter SUS)
금융 지원	▶ 메르쿠르 협동조합 은행 ▶ 사회적 자본 기금 (The Social Capital Fund)

9) 멕시코

□ 사회적경제 맥락

- 멕시코의 사회적경제는 1920년대 혁명 이후 정부가 대규모 농장인 아시엔다(hacienda)를 해체하면서 마을 공동 소유의 에히도(ejidos)를 만들어 가난한 농촌 마을에 분배하면서 시작⁵⁰⁾
- 지역 단위의 공유자원이 형성되던 시기에 공동 소유 및 운영을 위한 협동조합이 설립되면서 1927년 협동조합 일반법이 발표⁵¹⁾
- 이후 멕시코는 1970년대까지 연평균 4%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일구었으나, 양극화의 심화, 공공부문의 민영화, 자연환경 훼손 등의 사회문제 발생
- 1980년대 노동자가 파산한 기업을 인수하거나 커뮤니티 기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회연대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⁵²⁾
- 2009년, 연방헌법을 개정하면서 사회적 경제를 간접적으로 규정하였고, 2012년에 ‘사회연대경제법’을 통과시키면서 정책으로 채택⁵³⁾

멕시코 연방헌법 제25조 8항

다음과 같은 사회 부문의 경제 활동의 조직 및 확장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을 법으로 정한다: 마을 공유지, 노동자 조직, 협동조합, 지역공동체, 대다수 또는 배타적으로 노동자에게 속한 기업,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유통 그리고 소비를 위한 사회적 조직의 모든 형태

- 멕시코의 사회연대경제법은 사회연대경제의 목적, 사회연대경제 주체의 원칙과 가치, 그리고 경제의 사회적 섹터(Social Sector of the Economy)를 구성하는 법인격 유형을 정의

50) 주종택. (2017). 멕시코 농촌 사회의 공유자원과 사회적 기업. 이베로아메리카 연구, 28(1), 117-156.

51) Carola CONDE BONFIL, ‘Social Enterprise in Mexico: Concepts in Use in the Social Economy’, ICSEM Working Papers No22, EMES Network

52)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4791>

53) 조희문. (2020). 브라질의 사회적 연대적 경제 - 이론과 실제. 중남미연구, 39(3), 63-100.

□ 사회적기업 현황

- 멕시코 사회연대경제법(Ley de la Economía Social y Solidaria)은 제3조에서 사회적경제 부문을 다음과 같이 정의

멕시코 사회연대경제법 제3조

연대, 협력, 호혜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소유 기관에 의하여 창설되고,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부합하게 그 구성원과 공동체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업무를 하며 사람을 우선시하는 단체로서 조합의 형태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사회경제적 시스템⁵⁴⁾

- 제4조에는 사회적경제 부문으로 다음의 조직을 명시
 - ① 에히도(ejidos)
 - ② 공동체(Comunidades)
 - ③ 근로자 조직(Organizaciones de trabajadores)
 - ④ 협동조합(Sociedades Cooperativas)
 - ⑤ 노동자 소유 기업(Empresas que pertenezcan mayoritaria o exclusivamente a los trabajadores)
 - ⑥ 사회적으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를 위한 모든 형태의 일반적 사회조직(En general, de todas las formas de organización social para la producción, distribución y consumo de bienes y servicios socialmente necesarios)
- 멕시코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그 범위가 다양하고 비공식 경제가 많아 정확한 수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식별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약 60,943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⁵⁵⁾
- 사회적경제 조직 중 29,000여개가 에히도이며, 5,000개 이상이 협동조합, 2,000개 이상이 공동체 조직으로 추정
- 사회적경제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2% 규모이지만, 전체 고용에서

54) 한국법제연구원(2021), ‘사회적경제 법령집’

55)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2021), ‘ACUERDO por el que se aprueba el Programa de Fomento a la Economía Social 2021-2024’

차지하는 비중은 3.23%

- 멕시코는 남미에서 주로 사용되는 ‘연대경제’의 개념이 발달하여,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지는 않지만, 최근 임팩트 비즈니스, 사회적 비즈니스 등의 용어가 아쇼카 재단 등을 통해 많이 활용되는 중

□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 멕시코 사회연대경제법 제2장 제1절에는 사회적경제청(Del Instituto)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명시
- 사회적경제청의 역할은 사회적경제 부문의 참여, 교육, 연구, 보급 및 조직에 대한 지원
- 사회적경제청의 기능은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 진흥 프로그램 수립, 공공지원 및 감독, 연구조사 및 홍보 등
- 사회연대경제법 제2장 제2절에는 사회적경제 진흥자문위원회(Del Consejo Consultivo de Fomento De La Economía Social)를 청의 기관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
- 진흥자문위원회의 기능은 사회적경제 진흥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 관리, 시민 참여, 대외 협력 등
- 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 사회적경제 연구원(INAES)은 2019년부터 사회적경제의 전반을 지원하는 목표 수립
- 국립 사회적경제 연구원(INAES)은 주요 전략으로 지자체, 대학,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구성된 지역 연합인 NODESS(Nodos de Impulso a la Economía Social y Solidaria)를 설립하여 연결망 구축⁵⁶⁾
- 2020년 기준, 전국에 55개의 NODESS가 설립되어 있으며, NODESS는 각 지역에서 교육, 홍보, 경영지원, 신규 프로젝트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
- 멕시코 정부는 ‘2021-2024 사회적경제 진흥 프로그램’을 수립하며, 웰빙을

56) Lilian Hernández Nolasco, María Soledad Ramírez Flores, (2022), ‘El fomento a la Economía Social y Solidaria en México’, Otra Economía, vol. 15, n. 27: 103-122, enero- junio 2022.

위한 경제라는 목적에 따라 5가지 주요 목표 수립⁵⁷⁾

- ① 사회적경제 원칙·가치·관행에 기반한 생산·소비·저축·금융 문화를 전 세대에 확산
- ② 사회적경제 성장에 유리한 환경 조성
- ③ 사회적경제 부문의 역량 강화
- ④ 사회적경제를 통해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촉진
- ⑤ 사회적경제를 위한 포괄적 금융 정책 설계 및 실행

○ 각각의 목표에 따라 세부 과제 및 측정 지표를 수립하여 달성도 측정

○ 사회적경제 진흥 프로그램 예산은 2019년에 크게 증가⁵⁸⁾

표 9. 멕시코 사회적경제 진흥 프로그램 예산

연도	혜택 기업	예산	
		페소	원
2016	12,416	455,019,410	34,126,455,750
2017	9,830	455,269,761	34,145,232,075
2018	9,200	423,827,840	31,787,088,000
2019	-	681,428,541	51,107,140,575

57)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2021), ‘ACUERDO por el que se aprueba el Programa de Fomento a la Economía Social 2021-2024’

58) Carola Conde Bonfil (2019), ‘A new public policy to promote Mexico’s social economy?’, 7th EMES International Research Conference on Social Enterprise

10) 에콰도르

□ 사회적경제 맥락

- 에콰도르는 1937년 사회발전 장려를 위한 일련의 법률이 제정되면서 민중연대경제(Popular and Solidarity Economy, PSE)의 안정과 촉진을 위한 국가정책이 시작되었고, 협동조합법이 제정⁵⁹⁾
- 이후 40여년간 오랜 협력 개발 과정을 거쳐 민중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이뤘고, 이로 인해 빈곤, 실업, 고령화, 이주노동 등 다양한 문제 해결
- 민중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2008년, 세계 최초로 헌법에 민중·연대적 경제를 명문화
- 헌법 제283조에 ‘좋은 삶(Buen Vivir)’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경제체제의 목적이라고 명시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경제체제를 규정⁶⁰⁾

에콰도르 헌법 제283조

경제체제는 사회적 연대적이며, 인간은 주체이자 목적임을 인정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사회, 국가와 시장 간에 역동적이고 균형잡힌 관계를 추구하고, 좋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적 비물질적 조건들의 생산과 재생산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체제는 공공경제, 민간경제, 혼합경제, 민중경제와 연대적 경제 및 기타 헌법이 정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민중경제와 연대적 경제는 법으로 규율되며 여기에는 협동조합, 사단법인과 지역공동체 분야가 포함된다.

- 2012년에 “민중·연대적 경제와 연대적 금융분야에 관한 조직법(LEY ORGÁNICA DE LA ECONOMÍA POPULAR Y SOLIDARIA Y DEL SECTOR FINANCIERO POPULAR Y SOLIDARIO)”을 제정하면서 기존 협동조합법은 폐지
- ‘민중·연대 경제 및 금융법’은 총 179조문으로 구성된 방대한 법률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제시

59) Samuel Barco Serrano¹, Riccardo Bodini, Michael Roy, Gianluca Salvatori(2019), ‘Financial Mechanisms for Innovativ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Ecosystems’, ILO

60) 조희문. (2020). 브라질의 사회적 연대적 경제 - 이론과 실제. 중남미연구, 39(3), 63-100.

□ 사회적기업 현황

- ‘민중·연대 경제 및 금융법’은 제1조에서 민중연대경제의 조직 형태를 다음과 같이 정의

에콰도르 민중연대경제 및 금융법 제1조

민중연대경제란 그 구성원들이 연대, 협력, 호혜의 관계에 입각해 필요를 충족하고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개별 또는 단체적으로 생산, 교환, 판매, 자금조달, 재화와 서비스 소비의 과정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경제조직의 형태이다. 이 때 노동과 인간, 자연과의 조화 속에 양질의 삶을 추구하는 활동은 수익 창출과 자본축적 등에 대해 우선시된다.⁶¹⁾

- 제8조에는 민중연대경제의 조직형태를 다음과 같이 정의
 - ① 지역공동체 부문(sector comunitario)
 - ② 협회 부문(sector asociativo)
 - ③ 협동조합(Cooperativas)
 - ④ 민중경제단위(unidades economicas populares)
- 2023년 9월 기준, 에콰도르의 민중연대경제 조직은 16,193개로, 54만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협회가 83.2%, 협동조합이 16.1%, 공동체가 0.7%로 구성⁶²⁾
- 에콰도르 경제사회포용부의 추정에 따르면 PSE는 에콰도르 전체 고용의 64%를 창출하고 GDP의 13%를 차지
- 남미 국가의 특성상, 에콰도르 역시 사회적기업의 개념은 생소하며, 주로 민중연대경제(PSE)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새롭게 협회 형태로 벤처 기업들이 등장하는 추세
- 에콰도르는 연대금융 부문의 통계도 함께 공시하고 있는데, 2023년 10월 기준, 연대금융기관은 총 410개이며, 자산은 총 259억 9900만 달러, 부채는 226억 9000만 달러, 자본은 31억 8000만 달러 수준

61) 한국법제연구원(2021), ‘사회적경제 법령집’

62) <https://data.seps.gob.ec/#/dashboards/analytics/1/18>

□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 ‘민중·연대 경제 및 금융법’에 명시된 민중연대경제 지원기관은 다음과 같음

표 11. 에콰도르 민중연대경제 주요 주체 및 역할

기관	주요 역할
민중연대경제 감독원(Superintendence of Popular and Solidarity Economy, SPSE)	▶ PSE 및 민중연대금융부문(PSFS) 관리
민중연대경제 연구소(Institute of Popular and Solidarity Economy, IPSE)	▶ 경제 및 사회적 포용을 담당하는 국무부 산하 기관 ▶ 공공 정책을 실행하고 법의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조정
민중연대금융공단(National Corporation of Popular and Solidarity Finance, CONAFIPS)	▶ 민중연대경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관련 사회적 법령에 대응 ▶ PSE 등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
기관 간 위원회	▶ 부통령과 경제 및 사회적 포용, 산업 및 생산성, 경제 및 금융 등 세 가지 주요부처를 포함하는 조정 기관
통화금융 규제위원회(Monetary and Financial Regulation Board, MFRB)	▶ 공공 정책 수립과 통화, 신용, 교환, 금융, 보험 및 증권 규제 및 감독 기관 ▶ 민중연대금융 부문에 대한 지급 능력 및 금융건전성 규칙을 공포

○ ‘민중·연대 경제 및 금융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민중연대경제 감독원의 공공등록부에 등록 필요

11) 캐나다(퀘백)

□ 사회적경제 맥락

- 캐나다 퀘백주는 1980년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흐름으로 인해, 지역 내 실업률 상승, 사회복지 서비스 축소, 공기업 민영화 등의 사회문제 발생⁶³⁾
- 경기침체에 따른 광범위한 실업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주정부, 노동계, 시민사회, 협동조합 진영은 대규모 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노동자협동조합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개척⁶⁴⁾
- 한편, 캐나다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사회활동 및 정치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온 퀘백의 커뮤니티 조직은 1995년 여성들의 대규모 시위로 촉발된 공공 정책 개혁 과정에서 새로운 주체로 등장⁶⁵⁾
- 퀘백의 ‘빵과 장미의 행진’이라 불리는 이 시위는 실업률과 빈곤이 최고치를 기록하던 1995년, 여성들이 사회서비스, 빈곤 퇴치 기금 등을 주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사회적경제가 공론화되는데 크게 기여
- 1996년에 퀘백의 사회경제적 미래에 관한 회의가 구성되면서, 행정과 노동계, 협동조합 진영 뿐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조직까지 참여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프레임워크 개발
- 이를 계기로 노동계와 기업 이해관계자들 뿐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와 사회운동까지 포괄하는 퀘백 사회발전 모델이 수립되어 사회적경제 정책이 시작
- 이후, 공동체의 복지 증진,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사회적경제법(Social Economy Act) 제정
- 사회적경제법은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지원하고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하며, 사회적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예. 사회적경제를 퀘백 사

63) 홍선기, 김태환, (2015) ‘캐나다 퀘백의 Social Economy Act와 한국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비교’, 「법학논총」 Vol.32 No2.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64) 김창진, ‘캐나다 퀘백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시사점’(2013), 「협동조합네트워크」 통권 60호, 사단법인 한국협동조합연구소

65) Caitlin McMullin (2021), ‘Financial mechanisms for innovativ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ecosystems: The case of Quebec’, ILO

회경제적 구조의 일부분으로 인정해야 하는 각 부처의 의무,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경제부의 역할, 사회적경제 실행계획 수립 및 5년 주기의 성과평가 등)을 명시

□ 사회적기업 현황

- 퀘백의 사회적경제법 제3조는 사회적경제를 다음의 6가지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이 사회적 목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하며, 그 활동은 재화나 용역의 매매 또는 교환으로 구성됨을 밝히면서 6가지 운영원칙에 대해 규정⁶⁶⁾

표 12. 퀘백 사회적경제기업의 6가지 운영 원칙

원칙	주요 내용
제1원칙	기업의 목적은 그 구성원 또는 공동체의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다
제2원칙	기업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문서에 대한 접근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의미하는 하나 이상의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권한 대상이 아니다
제3원칙	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규칙은 그 구성원에 의한 민주적 지배구조를 규정한다
제4원칙	기업은 경제적 실행가능성에 고무된다
제5원칙	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규칙은 그 활동으로 창출된 잉여소득의 배분을 금지하거나, 각 구성원이 기업에서 수행한 거래에 비례하여 그 구성원 간에 잉여소득을 배분할 것을 규정한다
제6원칙	기업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 적용되는 규칙은 그 해산의 경우에 기업의 잔존재산은 유사한 목표를 공유하는 다른 법인으로 양도되어야 한다.
비고	이 조에서 말하는 사회적 목적은 금전적 이익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구성원 또는 공동체에 대한 봉사를 중심으로 하는 목적으로 특히 그 구성원 또는 공동체의 복지 및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업의 기여도로 특징지을 수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그 활동이 특히 재화나 용역의 매매 또는 교환으로 구성되고, 법인격이 부여된 협동조합, 공제조합 또는 조합이 제1항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이다.

66) 전용일(2018), '캐나다 퀘백 주의 사회적경제법과 협동조합법 주요내용 분석 및 시사점', 최신외국법제정보 2018 제6호, 한국법제연구원

- 퀘백의 사회적경제 기업은 11,200개 이상⁶⁷⁾이며, 약 48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퀘백 전역에서 22만명 이상을 고용⁶⁸⁾
- 퀘백의 사회적경제 기업의 구성은 협동조합이 2,400개로 21%, 상호금융협동조합이 350개로 3%, 나머지 8,400개가 비영리 조직으로 75%를 차지
- 대부분 소규모 조직으로 65%는 직원 수 10명 미만이고, 64%는 매출액이 50만달러 미만(퀘백 통계청, 2019)

□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 퀘백의 사회적경제법 제6조는 경제혁신부 장관(Le ministre de l'Économie et de l'Innovation)의 5가지 역할과 기능에 대해 규정
 - ① 사회적경제연합(Chantier) 및 퀘백협동조합상호부조위원회((Conseil québécois de la coopération et de la mutualité / CQCM)와 협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 (le ministre des Finances)과 공동으로 정부에 대해 퀘백에서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역할
 - ②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정부 조치를 조정하는 역할
 - ③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및 조치에서 정부를 지원하는 역할
 - ④ 이 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규정된 기능과 행위를 이행함에 있어 행정부를 지원
 - ⑤ 사회적경제의 지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 제10조는 정부가 매 5년마다 사회적경제 실천계획을 검토할 것을 규정
- 퀘백 사회적경제에 관한 정부의 주요 대화 상대 중 하나인 퀘백 사회적 경제 연합(Chantier de l'économie sociale)은 1995년 설립되어 퀘백의 사회적 금융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발전을 대변하고 촉진하는 핵심 주체로 활동
- 퀘백 사회적경제 연합(Chantier)은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로서 퀘백주의 22개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네트워크와 주택, 보육 등 부문별 네트워크를 중심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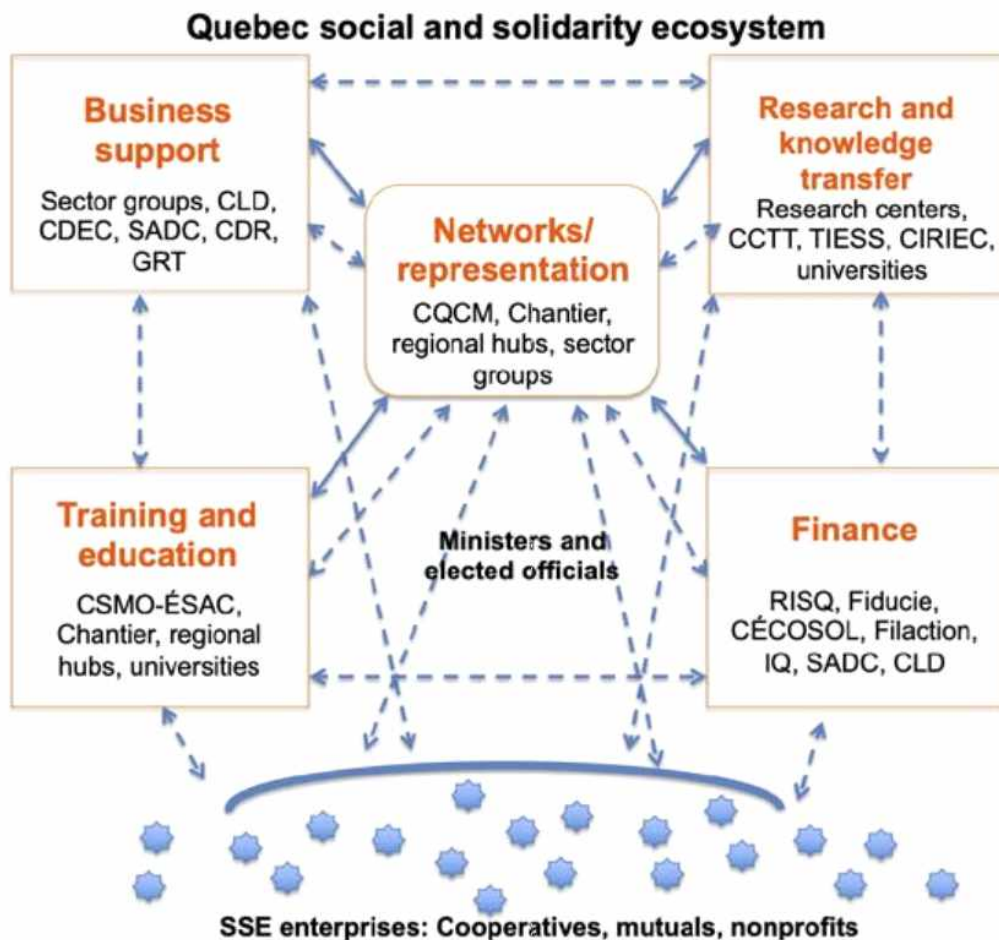
67) 2023년 11월 '사회적경제의 달'을 맞아 임시로 개설한 홈페이지(<https://mois-es.com/en/faits>)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수를 11,200개로 명시

68) Caitlin McMullin (2021), 'Financial mechanisms for innovativ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ecosystems: The case of Quebec', ILO

로 구성

- 지역 네트워크는 지역 사회적기업의 상담과 지원을 담당하며, 퀘백 사회적경제 연합(Chantier)은 주정부 차원에서 사회적경제를 홍보하고 대변
- 그 외 다양한 조직들과 각 분야별 협력체계 구축

그림 2. 퀘백 사회적경제 지원 생태계



69)

- 퀘백주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 서비스가 특히 발달하여, 금융 지원분야에서 다양한 주체가 활동중
- 1997년 샹티에가 최초로 설립한 퀘백 사회적 투자 네트워크(RISQ, Réseau

69) Levesque, Benoit(2016),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and Social Entrepreneurs: Towards Which New Ecosystem?', Papers in Political Economy

d'investissement sociale du Québec)는 퀘벡 정부와 민간 기부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여 창업 및 사업 개발의 초기단계에 초점을 맞춘 금융 옵션 제공

- 2007년 설립한 사회적경제기금(Fiducie du Chantier de l'économie sociale)은 혁신적인 '인내 자본'을 도입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 그 외 1983년에 설립된 퀘벡 노동연대기금(Fonds de Solidarité FTQ)과 데자르댕 사회연대기금(Caisse d'économie solidaire Desjardins), 퀘벡코아 공동체신용기금(Réseau québécois du crédit communautaire) 등은 각각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 및 대출 지원
- 2009년에는 사회적 금융기관의 네트워크인 CAP Finance를 설립하여 퀘벡의 연대금융을 개발·촉진하고, 금융기관의 전문성 개발 및 평가 지원
- 퀘벡 주정부는 '2015-2020 사회적경제 전략계획'에서 6가지 목표 수립⁷⁰⁾
 - ①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전문가 지원, 맞춤형 금융 도구 개발 등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공을 위한 방안 모색
 - ② 시장 접근성 개선
 - ③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의 노력 촉진
 - ④ 사회적경제 기업의 노동통합 활동 장려
 - ⑤ 지역 경제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기업 소유권을 이전받는 집단적 기업(collective enterprises) 지원
 - ⑥ 퀘벡 주 전체의 사회적경제기업 발전에 기여
- 퀘벡 경제혁신부는 '2015-2020 사회적경제 전략계획'을 평가하여, 실행 계획의 이행으로 5억 4,300만 달러의 투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목표치인 5억 달러를 초과했다고 설명
- 2020년에 발표된 '2020-2025 사회적경제 전략계획'에는 3가지 전략목표 수립⁷¹⁾

70) Caitlin McMullin (2021), 'Financial mechanisms for innovativ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ecosystems: The case of Quebec', ILO

71) Gouvernement du Québec. (2020). La force du collectif: Plan d'action gouvernemental en

- ① 개인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 ② 사회적경제의 강점을 바탕으로 혁신과 투자 촉진
 - ③ 모두의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으로서 집단적 기업가 정신을 장려
- 퀘벡 정부는 이 계획의 실행을 위해 5년간 1억 3천7백만달러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를 통해 5억 2천만달러의 투자가 유치될 것으로 기대

3장

해외 사회적경제 주요국 관련 제도 및 정책 조사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1. 재정지원 및 직접지원
2. 판로지원
3. 경영지원
4. 금융지원
5. 세제혜택 및 기타
6. 사회적가치

1. 재정지원 및 직접지원

1) 프랑스

- ESUS로 인증을 받으면 연대임금저축기금(Fonds d'épargne salariale solidaire)에서 기금 총액의 10%를 연대기업에 투자.
- 이 기금은 2010년 1월부터 모든 기업은 가입이 의무이며(이전까지 50인 이상 고용 기업에만 해당), 직원은 납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함.
- 펀드의 90%는 일반 금융시장에 투자, 10%는 연대기업과 연대경제 분야에 투자⁷²⁾
- ESUS는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됨⁷³⁾

2) 이탈리아

- 협동조합기본법(Le cooperative sociali e i loro consorzi, di cui alla legge 8 novembre 1991, n. 381)에 따라 B타입인 노동 통합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고용된 취약계층의 사회보험료를 전액 감면해주고 있음

3) 스페인

- 코로나19 이후 사회적경제의 핵심 분야에서 공적 보조금이나 분야별로 준비금을 조성하여 지원.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 고용에 따른 사회보장 비용 면제⁷⁴⁾
- 고용통합기업이 취약계층을 채용할 경우, 해당 종업원의 사회보험료 사업장 부담금을 감액 받고 인건비 보조금도 받을 수 있음⁷⁵⁾

72) 신재민(2021). 외국의 사회적경제법과 정부 정책- 프랑스 사회연대경제법과 정책을 중심으로 -. 사회적경제기본계획연구 포럼

73) 신재민(2021). 외국의 사회적경제법과 정부 정책- 프랑스 사회연대경제법과 정책을 중심으로 -. 사회적경제기본계획연구 포럼

74) 라이프인(2020.5.20) 코로나19 위기에 스페인 사회적경제 분야의 대응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0439>

75) OECD (2023), Policy Guide on Legal Frameworks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LEED), OECD Publishing, Paris

4) 룩셈부르크

- 2021년도에는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 및 사회적임팩트기업 인증 활성화 위한 인센티브 도입⁷⁶⁾

5) 벨기에

- 왈롱지방의 경우 2004년 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컨설팅기관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왈롱지방정부로부터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사회적경제기업 경영 지원을 함

6) 그리스

- 사회연대경제 주체는 사회적경제 기금, 국가 기업가 정신 및 개발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가 정신 지원 프로그램과 고용 지원을 위한 노동고용청(O.A.E.E.D.)의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음(동법 제5조, 제 64조).
- 사회적경제기금의 자원은 국가 등의 공공 투자로부터 이뤄지며 노동부, 사회 보장부, 사회연대부, 재정경제부, 개발관광부 장관의 공동 결정에 따라 운영 됨(제10조).
- 사회적경제기업의 실직자는 OAD의 실업 등록부에 실업자로 등록될 수 있음. 최소 4개월 동안 실업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고, OAD에 해당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을 등록했으며, 이전 교육 또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 참여 종료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경우에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음(제30조)

7) 영국

- 사회적기업이 활용하는 가장 큰 보조금 제공처는 복권 기금(National Lottery)이며, 그 외 UnLtd 재단, 자선단체, ERDF와 같은 공동 기금 프로그램의 보조금 활용⁷⁷⁾

76) OECD (2023), Policy Guide on Legal Frameworks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LEED), OECD Publishing, Paris

77) European Commission (2019) Social enterprises and their ecosystems in Europe. Updated country report: United Kingdom. Fergus Lyon, Bianca Stumbitz, Ian Vickers. Luxembourg:

8) 덴마크⁷⁸⁾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덴마크 보험 관련 재단이 설립한 사회적 자본기금 (Social Capital Fund)은 실업자와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 상담, 교육 제공
- 사회적 자본 기금은 2018년부터 사회적 책임 기업이라는 더 넓은 영역으로 지원 방향 전환
- 중앙 정부의 사회적기업 정책은 없으며, 각 지자체별 정부 기금 지원을 통해 자체적인 사회적기업 지원 프로그램 진행중

9) 멕시코

- 멕시코의 사회적기업 지원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고, 4년 단위로 수립하는 사회적경제 진흥계획에 따라 지원
- 2019년 사회적경제 운영 규정에 따르면, 소외지역 및 원주민 주거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에 보조금 지급⁷⁹⁾
- 생산 프로젝트의 개발 및 구현에 10,000페소(약 75만원)부터 최대 2백만 페소(약 1억5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10) 퀘벡

- 퀘벡의 사회적경제 지원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고,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사회적경제 전략계획에 따라 지원
- '2020-2025 사회적경제 전략계획'의 재정지원 항목은 아래와 같음⁸⁰⁾
- ① 22개 지역 사회적경제 클러스터의 운영 및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해 5년간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78) European Commission (2019) Social enterprises and their ecosystems in Europe. Updated country report: Denmark. Authors: Lars Hulgård and Lisa Chodorkoff.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79) Carola Conde Bonfil (2019), 'A new public policy to promote Mexico's social economy?', 7th EMES International Research Conference on Social Enterprise

80) Gouvernement du Québec. (2020). La force du collectif: Plan d'action gouvernemental en économie sociale 2020-2025. Québec.

1,210만 달러를 지원

- ② 사회적경제 비영리조직(d'OBNL en économie sociale) 창업 및 기술 지원을 위해 4년간 총 415만 달러를 배정하여 200개 프로젝트 지원
- ③ 소유주 고령화로 인해 지속이 불투명한 기업의 소유권을 인수하는 집단인수 프로젝트 지원 프로그램(le Programme de soutien à la reprise collective / PSRC)에 5년간 100만 달러 자금 지원
- ④ 사회적경제의 전략 부문(고령화, 혁신 및 기술, 식량 및 자급자족, 순환경제 및 환경 등)에서 집단적 기업 프로젝트를 위해 4년간 500만달러 예산 지원
- ⑤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적인 신규 프로젝트 및 협력 프로젝트를 위해 4년간 401만 달러 지원
- ⑥ 집단적 기업가 정신(l'entrepreneuriat collectif)을 장려하기 위해 퀘백 사회적경제 연합(Chantier)에 5년간 443만달러 재정지원
- ⑦ 퀘백 주정부, 퀘백 노동연대기금, 노동조합연맹과 협약을 통해 학생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일하며 기술을 습득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5년간 1,200명)
- ⑧ 사회적경제기업 자산화 프로그램(renouvellera le Programme d'immobilisation en entrepreneuriat collectif, PIEC)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의 취득, 건설, 개보수 지원(4년 2,850만 달러)

2. 판로지원

1) 프랑스

- 프랑스는 1990년대부터 지방 및 지역 당국은 계약서에 사회적 조항을 포함시키는 데 관심을 기울여 왔음.
- 2007년 초, 프랑스 정부는 경제재정부(DAJ) 법무국 산 하 공공조달감시국에서 주관한 공공조달의 사회적 측면에 관한 워크숍에서 마련한 공공조달의 사회적 조항 관련 지침을 발표⁸¹⁾.
- 2014년에 제정된 사회연대경제법 제13조 제1항에서 연간 총 구매액이 9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지방 당국이 사회적 책임 구매 제도를 도입하도록 장려했으나 2018년 11월 법이 개정되며 이 조항이 삭제되어 2019년 4월 1일부터는 적용되고 있지 않음.
- 프랑스 낭트에서는 2001년부터 책임 있는 공공조달(RPP)을 시행해옴.
- 2017년에는 지난 15년 동안 개발된 수많은 혁신 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조달 활동과 중소기업 지원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책임 구매 촉진 제도(SPAR)를 채택
- 이로 인해 정치적인 차원에서 모든 선출직 광역의회 의원에게 향후 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각 투자의 사회적 및 환경적 조항을 종합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책임 구매 촉진 제도의 영향을 평가함⁸²⁾

2) 스페인

- 스페인의 공공조달은 GDP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음. 이중 70%를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2018년 3월 공공부문계약법이 개정되어 제1조에서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공공조달 접근을 촉진한다”를 규정함⁸³⁾

81) European Commission (2020) Buying Social – a guide to taking account of social considerations in public procurement.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82) European Commission (2020) Buying Social – a guide to taking account of social considerations in public procurement.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83)

3) 벨기에

- 플랑드르 지역에서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00% 지속가능한 공공조달(SPP)를 목표로 설정
- 이를 위해 9개 제품군에 대한 최소 지속 가능성 기준과 17개 제품군에 대한 지침 및 기준 제안을 정하고, 30,000유로 이상의 모든 조달은 계약 관리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지속가능성, 환경, 사회적기업 여부, 윤리성 등의 기준에 답변을 해야 함⁸⁴⁾

4) 그리스

- 유한책임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조달사업에서 우선권 보유⁸⁵⁾

5) 영국

- The Crown Commercial Service(CCS)는 공공 조달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 공공조달의 원칙을 “최소한의 지출로 인한 최적의 품질”, “경쟁”으로 규정⁸⁶⁾
- 2012년 공공서비스(사회적 가치)법이 제정되면서, 잉글랜드 전체 공공기관 및 웨일즈 일부 기관의 조달시 지역의 경제·사회·환경 등의 사회적가치를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

6) 에콰도르

- ‘민중·연대 경제 및 금융법’ 제 132조 장려책에 공공조달계약을 첫 번째로 명시하여, 주무당국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민중연대경제 단체를 우선시 할 것을 규정

<https://www.elsaltodiario.com/mecambio/-la-contratacion-publica-como-politica-de-fomento-de-la-economia-social>

84) European Commission (2020) Buying Social – a guide to taking account of social considerations in public procurement.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85) OECD (2023), Policy Guide on Legal Frameworks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LEED), OECD Publishing, Paris

86) European Commission (2019) Social enterprises and their ecosystems in Europe. Updated country report: United Kingdom. Fergus Lyon, Bianca Stumbitz, Ian Vickers.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제135조와 제136조에는 시정부가 서비스 제공, 소규모 토목공사의 시행 등을 위해 지역공동체 조직을 장려할 것을 명시하고, 지방 공기업들이 공공서비스를 위탁 운영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단체들의 조직을 장려할 수 있도록 규정
- 에콰도르의 공공구매액은 2010년 약 1,200만 달러에서 2016년 약 9,000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7년간 누적 3억 9,500만 달러를 달성⁸⁷⁾
- 또한, 2014년 슈퍼마켓 및 관련 부문과 공급업체에 대한 모범 상업 활동 매뉴얼을 제작하여, 소매업체가 공급업체의 최소 15%를 중소기업 또는 민중연대경제 업체로 유지하도록 규정
- 위 매뉴얼을 통해 PSE 단체의 개별 소비자 매출이 2014년 150만 달러에서 2016년 1,200만 달러 이상으로 급증

7) 퀘백

- '2020-2025 사회적경제 전략계획'의 판로지원 항목은 아래와 같음⁸⁸⁾
 - ① 정부 및 지자체 공공구매 담당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 홍보 및 네트워크 활동에 5년간 100만달러 지원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계약 중 0.8%인 6억 1,900만 달러가 사회적경제 기업과 체결⁸⁹⁾
- 퀘백의 몬트리올 사회적경제위원회는 “Social Economy, I Buy!” 캠페인의 일환으로 매년 사회연대경제 주체, 공공기관 그리고 대기업을 연계⁹⁰⁾

87) Samuel Barco Serrano¹, Riccardo Bodini, Michael Roy, Gianluca Salvatori(2019), 'Financial Mechanisms for Innovativ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Ecosystems', ILO

88) Gouvernement du Québec. (2020). La force du collectif: Plan d'action gouvernemental en économie sociale 2020-2025. Québec.

89) www.collectif.qc.ca/le-ceiq/qui-sommes-nous

90) OECD(2023), Policy Guide on Legal Frameworks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LEED), OECD Publishing, Paris.

3. 경영지원

1) 스페인

- 사회적 경제 발전에 중점을 둔 ESF 운영 프로그램(OP)을 운영하고 있는데, 차별의 위험이 가장 큰 집단(여성, 이주민, 재소자 및 전과자, 장애인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년 고용 이니셔티브(Youth Employment Initiative) 자금을 포함해 약 23억 유로가 배정되었으며, 교육, 훈련, 취업 및 견습 과정을 포함하는 다양한 국가 및 지역 프로젝트, 사회적경제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⁹¹⁾
-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 분야 지원을 위해 2022년 12월부터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최소 30개 운영하여 2023년 4분기 완료를 목표로 보조금을 책정
 - ①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세대 교체가 없는 생존 가능한 기업을 사회적경제로 전환하여 근로자가 경영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유지
 - ② 세대 변화와 청년 기업가 정신에 초점을 맞춘 혁신적 성격의 사회적경제 생산 구조를 만들고 통합
 - ③ 디지털 플랫폼 구축, 프로세스 자동화, 기술 도구 사용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기술 현대화를 지원하여 특히 농촌 지역의 시민 복지를 개선
 - ④ 협동조합, 노동자 소유 기업 및 기타 사회적 경제 공식의 네트워크 촉진과 함께 사회에 새로운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역량 강화 및 교육 조치를 제공
 - ⑤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회적 경제 기업 및 단체의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⁹²⁾

91) OECD (2020), Regional Strategies for the Social Economy: Examples from France, Spain, Sweden and Poland, OECD LEED Papers, Publishing, Paris

<https://ec.europa.eu/esf/main.jsp?catId=378>

92) Plan Integral de Impulso a la Economía Social para la Generación de un Tejido Económico, Inclusivo y Sostenible y por la que se aprueba la convocatoria de ayudas para proyectos innovadores para los años 2022 y 2023, en el marco del Plan de Recuperación, Transformación y Resiliencia. https://www.mites.gob.es/ficheros/ministerio/sec_trabajo/perte_EsyEC/OByC.pdf

2) 멕시코

- 2019년 사회적경제 역량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개별 사회적경제조직에게 10,000페소(약 75만원)부터 최대 100,000페소(약 750만원) 보조금 지원⁹³⁾

3) 에콰도르

- ‘민중·연대 경제 및 금융법’ 제 132조 장려책에는 PSE에 대한 교육훈련(일반 비즈니스, 사회적경제 등),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보완적 성격의 지불 수단 이용 권리, 홍보와 사회보장, 형평성 등의 지원 제도를 명시

4) 퀘벡

- ‘2020-2025 사회적경제 전략계획’의 경영지원 항목은 아래와 같음⁹⁴⁾
 - ① 사회적경제기업이 외부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전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5년간 500만 달러를 지원하여 600개 프로젝트 지원 예정
- 경영지원의 경우, 지역 사회적경제 클러스터를 통해 상시 지원 가능

93) Carola Conde Bonfil (2019), ‘A new public policy to promote Mexico’s social economy?’, 7th EMES International Research Conference on Social Enterprise

94) Gouvernement du Québec. (2020). La force du collectif: Plan d’action gouvernemental en économie sociale 2020-2025. Québec.

4. 금융지원

1) 프랑스

- 사회연대경제법을 제정하면서 노동법을 개정하여 ESUS 라벨을 받은 경우 더 많은 금융 지원 및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
- Madelin⁹⁵⁾(IR-PME) 제도를 통해 투자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납세자의 민간 저축 투자를 장려하면서 중소기업은 새로운 자금 조달원을 찾을 수 있는 제도
- 소득세 감면 금액은 독신의 경우 최대 €50,000, 결혼 또는 동성 동거인 부부의 경우 최대 €100,000까지 매년 투자 총액의 18% 금액이며, 2022년 3월 18일부터 25%로 증가되었음⁹⁶⁾.
- 사회적영향계약(CIS, Social Impact Contract)는 민간 투자자가 혁신적인 사회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성공할 경우에만 공공 기관에서 이를 상환하는 방식.
- 이는 수행된 조치의 결과를 측정하여 혁신적인 사회 프로그램 지출에 대한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3월부터 2017년 1월 30일까지 사회적 행위자와 투자자가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안전한 법적 틀을 보장⁹⁷⁾
- 2016년 3월부터 프랑스에서 소셜 임팩트 계약(SIC)을 시범 운영하였는데, 이는 2010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것으로 사회적기업 등 사회혁신 관련하여 민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도구
- 사회적 문제 확인, 해결책 제안, 투자자금 지원, 사회적 목표에 따른 영향력 측정, 목표 달성시 공공기관이 위험 감수에 대한 이자 보상과 함께 투자자가 투입한 자본 상환 약속 등의 5단계 과정으로 이뤄짐⁹⁸⁾.

95)

<https://www.economie.gouv.fr/particuliers/reduction-impot-revenu-investissements-entreprise-pme-madelin>

96) <https://www.economie.gouv.fr/entreprises/agrement-entreprise-solidaire-utilite-sociale-ess>

97) https://www.esspace.fr/politiques_ess.html

98) avise(2020). Mode d'emploi : Évaluer l'impact social

2) 이탈리아

- 기업 순환 기금(FRI)은 2015년 조성된 기금으로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총 2억 2,300만 유로가 배정
- 경제개발부의 보조금 대출(대출의 70%)과 경제개발부의 특정 목록에 등록된 은행 중 한 곳의 시장 기반 자금 조달 대출(대출의 30%)로 이뤄지며 대출은 적격 비용의 최대 80%까지 충당.
- 연 0.5%의 보조금 이자율로 최대 4년의 선상환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15년 동안 제공. 이용하려면 기업은 먼저 은행과 중앙 기관으로부터 용자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⁹⁹⁾
-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2000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경제개발부에서 관리하고 있음.
- 중소기업은 기금이 보증하는 자원에 대한 추가 보증(예 : 보증서 또는 보험 증권)을 제공 할 의무없이 자금을 확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갖게 되며, 사회적기업도 활용 가능¹⁰⁰⁾
- 연대기금(Fondi Mutualistici)은 이탈리아 민영화 추세에 반하여 협동조합부문의 역량강화 및 결속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제59/1992호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기존 및 신설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시스템 전반의 발전을 목적 운영
- 연대기금회원으로 가입한 협동조합과 컨소시엄은 매년 순이익의 3%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출연하고, 각 협동조합은 (연대기금이 할당된) 협동조합 연합회에 기금을 납부하거나 정부에게 직접 납부함¹⁰¹⁾

<https://www.avise.org/ressources/mode-demploi-evaluer-limpact-social>

99) Barco, S., R. Bodini, M. Roy, and G. Salavotori(2019). Financial mechanisms for innovativ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ecosystems.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100) European Commission (2020) Social enterprises and their ecosystems in Europe. Updated country report: Italy. Author: Carlo Borzaga.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101) OECD (2023), Policy Guide on Legal Frameworks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LEED), OECD Publishing, Paris

3) 스페인

- 코로나19 이후 윤리은행(사회적경제계열 금융 기관)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위한 대출을 촉진하고 있음¹⁰²⁾

4) 룩셈부르크

- 일부 은행은 사회적 기업가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맞춤형 은행 서비스를 개발하여 운영중
- 에티카 아스블은 1997년부터 룩셈부르크 중앙은행(Banque and Caisse d'Epargne de l'Etat, BCEE)과 협력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안 저축 메커니즘을 구축함¹⁰³⁾
- 2017년 룩셈부르크 신용투자협회(Société Nationale de Crédit et d'Investissement, SNCI)와 양해각서를 체결. SNCI는 룩셈부르크에 기반을 둔 기업의 중장기 자금 조달을 전문으로 하는 공법 은행 기관임¹⁰⁴⁾

5) 벨기에

- 2014년 11월 브뤼셀에서 이민자의 사회-직업적 통합을 촉진을 목적으로 최초의 소셜 임팩트 본드가 마련
- 소셜 임팩트 본드는 이전에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했던 공공의 관심 분야에서 민간과 공공 기관이 협력하여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자선 투자자가 약속한 자금을 사회적 영향력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상환하는 방식¹⁰⁵⁾

102) 라이프인(2020.5.20) 코로나19 위기에 스페인 사회적경제 분야의 대응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0439>

103) Barco, S., R. Bodini, M. Roy, and G. Salavotori(2019). Financial mechanisms for innovativ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ecosystems.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104) European Commission (2020) Social enterprises and their ecosystems in Europe. Updated country report: Luxembourg. Authors: David Hiez and Francesco Sarracino.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105) Rijpens, J., & Mertens de Wilmars, S. (2015). Baromètre des Entreprises Sociales en Belgique-Edition 2015.

6) 영국

- 사회적투자감세제도(Social Investment Tax Relief)는 자선단체(charity), 공동체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 공익협회(community benefit society)로 등록되어 있거나 상시근로자 250인 미만, 총 자산 1,500만 파운드 미만인 법인으로서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는 법인에 투자할 때 혜택 제공¹⁰⁶⁾ 소득세 납부액에서 투자 비용의 30%공제
- 빅 소사이어티 캐피탈(Big Society Capital) 및 접근성사회투자재단(ACCESS - The Foundation for Social Investment)과 함께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하여 굿 파이낸스(Good Finance) 플랫폼 개설¹⁰⁷⁾
(굿 파이낸스 플랫폼은 공유된 가치에 기반하여 조직과 적합한 투자자의 연결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사회적 금융에 대한 기초 정보 제공, 조직 진단, 투자자 연결 등을 지원)

7) 덴마크¹⁰⁸⁾

- 공공 차원의 금융지원은 없으며, 자선단체, 민간 재단 차원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면서 연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형태가 다수
- 메르쿠르 협동조합 은행 등 윤리적 은행에서 사회·문화·환경적 목표가 선명한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

8) 멕시코

- 2019년 사회적금융기관의 역량 강화, 리스크 관리,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15,000페소(약 110만원)부터 최대 200만 페소(약 1억5천만원)까지 지원¹⁰⁹⁾

9) 에콰도르

106) OECD(2023), Policy Guide on Legal Frameworks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LEED), OECD Publishing, Paris.

107) <https://www.goodfinance.org.uk/>

108) European Commission (2019) Social enterprises and their ecosystems in Europe. Updated country report: Denmark. Authors: Lars Hulgård and Lisa Chodorkoff.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109) Carola Conde Bonfil (2019), 'A new public policy to promote Mexico's social economy?', 7th EMES International Research Conference on Social Enterprise

- ‘민중·연대 경제 및 금융법’ 제 132조 장려책에 특화된 금융서비스의 혜택과 지원서비스에 대해 명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하지 않음
- 금융 지원은 주로 민중연대금융공단이 주로 제공하며, PSE 및 연대금융(SFPS)을 대상으로 진행¹¹⁰⁾
- 민중연대금융공단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PSE 및 연대금융기관에 9조 2,224억 3천만달러를 투자

표 13. 에콰도르 민중연대금융공단의 금융 서비스

주요 서비스	내용
PSFS 단체 평가	▶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해당 기관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연대금융기관(SFPS) 평가모델인 CAFI를 개발 ▶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자금 충당에 제한
2차 대출	▶ 연대금융기관(SFPS)에 2차 대출을 제공하여 PSE에게 대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 ▶ 이민자 지원, 민중주택, 사회적 프로젝트와 연계된 신용상품 개발
강화	▶ 연대금융기관(SFPS)이 관리, 재무, 사회적경영 역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육, 기술 지원, 금융소프트웨어 이전 등이 포함
보증 서비스	▶ 담보가 없는 PSE 기업가에 대한 신용 제공을 촉진하기 위해 SFPS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 서비스 개발 ▶ 민중연대금융공단이 연대금융기관(SFPS)의 보증 제공
컴퓨터 시스템	▶ 연대금융기관(SFPS)에 무료로 제공하는 금융 및 거래 관리용 컴퓨터 솔루션 지원

10) 퀘벡

- ‘2020-2025 사회적경제 전략계획’의 금융지원 항목은 아래와 같음¹¹¹⁾
- ① 사회적경제기업 자산화 프로그램(prolongera le Programme de capitalisation des entreprises d'économie sociale, CAES)을 연장하여, 창업, 확장 프로젝트 촉진을 위한 대출 및 기부금 제공(5년 1,400만 달러)

110) Samuel Barco Serrano1, Riccardo Bodini, Michael Roy, Gianluca Salvatori(2019), ‘Financial Mechanisms for Innovativ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Ecosystems’, ILO

111) Gouvernement du Québec. (2020). La force du collectif: Plan d'action gouvernemental en économie sociale 2020-2025. Québec.

- ②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자본 조달의 다양화를 위한 금융 상품(커뮤니티 채권, 우선주 등) 개발 지원
- 퀘백은 다양한 연대금융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정책적 지원 외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수단이 다양함¹¹²⁾
 - ① 노동연대기금(FTQ) : 사회·환경적 영향을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
 - ② 퀘백 사회투자기금(RISQ) : 신생 사회적경제기업 및 프로젝트에 대출과 기술 지원
 - ③ 퀘백 투자청(Investissement Québec) : 공기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출과 대출 보증 제공, 민간 기업의 공동인수 지원
 - ④ 연방 사회금융기금(Federal Social Finance Fund) : 캐나다 연방정부 기금으로 특정 정책 목표(주택, 빈곤 완화, 취약계층 일자리 등)을 위하여 비영리 및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단체에 지원
 - ⑤ 지역개발기금(Local development funds) :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가를 지원하는 기금으로 2015년까지 운영되었으며, 이후 많은 지자체에서 기능 흡수
 - ⑥ 커뮤니티 채권 및 소액 신용(Community bonds and micro-credit) : 커뮤니티 채권은 비영리 단체가 시민 투자자나 커뮤니티 구성원으로부터 기부금·대출을 모금할 수 있는 채권이며,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소액 신용대출도 지역별로 활성화

112) Caitlin McMullin (2021), 'Financial mechanisms for innovativ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ecosystems: The case of Quebec', ILO

5. 세제혜택 및 기타

1) 프랑스

- 배당을 제한하고 이윤을 재투자하는 사회연대경제 주체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사회보험료 및 기타 인건비 지출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제공¹¹³⁾
- 자산동결 처리된 공익협동조합(Cooperative Societies of Collective Interest, SCIC)의 수익에는 과세하지 않으며 SCIC의 부가가치세율은 실제로 수행하는 활동에 따라 결정함¹¹⁴⁾
- 지역지원계획(Dispositif Local d'Accompagnement, DLA)은 2002년에 창설되어 2014년 사회연대경제법에 따라 사회연대경제의 고용주에게 재무관리 지원을 비롯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¹¹⁵⁾

2) 이탈리아

- 사회적기업이 이전 회계 연도에 발생한 손실을 공제한 후 연간 순이익의 3%를 초과하지 않는 지분을 사회적기업의 촉진 및 개발 관련 기금에 할당할 경우 소득세 공제(동법 제16조)
- 사회적기업의 이익 및 잉여금이 사회적 목적 추구 및 자산의 증가에 배분될 경우 면세 혜택
- 2017년 개정 이후 사회적기업의 지위를 취득하고 36개월 이내에 설립된 협동조합에 대한 개인(100%) 및 법인 투자금(30%)에 대해서는 소득세 공제가 되지만 3년 이상 투자를 유지해야 하며 개인은 100만 유로를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은 180만 유로를 초과할 수 없음(동법 제18조).
- 사회보험료 및 기타 인건비 지출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도 함¹¹⁶⁾

113) OECD (2023), Policy Guide on Legal Frameworks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LEED), OECD Publishing, Paris

114) OECD (2023), Policy Guide on Legal Frameworks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LEED), OECD Publishing, Paris

115) <https://www.info-dla.fr/>

116) OECD (2023), Policy Guide on Legal Frameworks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LEED), OECD Publishing, Paris

- 사회적경제 자격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은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고, A유형 사회적협동조합(사회서비스제공형)은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 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5%를 적용함¹¹⁷⁾

3) 스페인

- 사회보험료 및 기타 인건비 지출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제공¹¹⁸⁾
- 비영리단체로 인정받은 사회적이니셔티브협동조합의 최고 소득세율을 10%로 제한하고 있으며 사업활동세의 95%를 감액 받음.
- 사회적이니셔티브협동조합은 연대를 위한 사회적 요구와 실업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활동(협동조합에 관한 법률 제27/1999호 서문)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¹¹⁹⁾

4) 룩셈부르크

- 2018년에 동 법률을 개정하며 비영리단체와 재단에겐만 주어졌던 세금감면과 같은 혜택을 사회적임팩트기업도 누릴 수 있도록 변경
- 이를 위해 자본금 100%가 임팩트 주식으로 구성된 경우 직접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동법 제9조)
- 2016년 노동고용사회연대경제부와 사회연대경제연합이 최초의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터인 6zero1을 공동으로 출범
- 6zero1은 사회적 기업가들이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고 창업을 하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16년 50개 이상의 지원서를 받아 이 중 20개를 선정하였고, 그 중 10개 기업이 설립되었으며, 이 중 5개 기업이 2016년 12월 12일 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음¹²⁰⁾

117) OECD (2023), Policy Guide on Legal Frameworks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LEED), OECD Publishing, Paris

118) OECD (2023), Policy Guide on Legal Frameworks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LEED), OECD Publishing, Paris

119) OECD (2023), Policy Guide on Legal Frameworks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LEED), OECD Publishing, Paris

- 2018년 사회적 경제 및 혁신 센터(Maison de l'économie sociale et de l'innovation sociale, MeSIS)를 개설하였는데, 이는 프랑스(Les Canaux)와 캐나다 퀘백(La Maison de l'innovation)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입주하여 네트워킹을 하는 공간¹²¹⁾

5) 벨기에

- 배당을 제한하고 이윤을 재투자하는 사회연대경제 주체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사회연대경제 주체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얻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¹²²⁾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종사할 경우,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면제받을 수 있음¹²³⁾
- 사회적기업 창업 및 컨설팅 기능을 통합하여 2013년 설립된 사회혁신팩토리(Social Innovation Factory)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기업과 사회혁신활동을 진흥, 지도 및 지원¹²⁴⁾
- 왈롱지방의 경우 2004년 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컨설팅기관에 대해 인증. 컨설팅 대상은 비영리 단체, 재단, 사회적기업, 전국협동조합협의회 등을 하며 컨설팅을 받은 조직들 가운데 50%이상이 시장 활동을 하는 조직이어야 함.
- 사회적경제 컨설팅 기관은 창업지원, 신규일자리 창출, 창업 이후 최장 2년까지 사후관리, 사업계획서 검토, 홍보활동 지원, 재정확보 지원 등을 수행¹²⁵⁾

120) European Commission (2020) Social enterprises and their ecosystems in Europe. Updated country report: Luxembourg. Authors: David Hiez and Francesco Sarracino.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121) Barco, S., R. Bodini, M. Roy, and G. Salavotori(2019). Financial mechanisms for innovativ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ecosystems.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122) OECD (2023), Policy Guide on Legal Frameworks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LEED), OECD Publishing, Paris

123) OECD (2023), Policy Guide on Legal Frameworks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LEED), OECD Publishing, Paris

124) OECD (2023), Policy Guide on Legal Frameworks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LEED), OECD Publishing, Paris

125) 더퍼블릭뉴스(2015). 벨기에 왈롱지방의 ‘레뚜르니에르’와 ‘테르’, 제도 뛰어넘은 주민중심 주거·일자리 복지 <https://www.thepub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00>

6) 그리스

- 유한책임 사회적협동조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지방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혜택을 받음¹²⁶⁾

7) 영국

- CLG형태의 사회적기업은 지방 납부 사업세 8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매년 사회적기업 현황조사(SEUK), 커뮤니티 비즈니스 시장조사, 사회적기업 트렌드 조사(2년 단위) 진행
- 경제사회연구위원회(ESRC) 및 기타 기관 등의 자금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 관련 연구 진행(2008년~2014년)¹²⁷⁾

8) 덴마크¹²⁸⁾

- 공익단체가 비영리 활동 및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경제활동에 대해 법인세 감면
- 공익법인으로 인정된 단체나 사회적기업에 부가가치세율 완화(19%→7%)

9) 멕시코

- 국세청이 비영리단체(자선단체)로 승인한 경우, 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비영리단체가 수취하는 기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¹²⁹⁾
-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며, 멕시코시티에서는 공제대상단체가 인권증진, 취약계층보호, 연구 및 과학활동, 도시개발 등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활동과 관련된 재산세 100% 공제

126) OECD (2023), Policy Guide on Legal Frameworks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LEED), OECD Publishing, Paris

127) <https://www.birmingham.ac.uk/research/tsrc/research/social-enterprise.aspx>

128) OECD(2023), Policy Guide on Legal Frameworks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LEED), OECD Publishing, Paris.

129) OECD(2023), Policy Guide on Legal Frameworks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LEED), OECD Publishing, Paris.

10) 에콰도르

- ‘민중·연대 경제 및 금융법’ 제139조에는 PSE 단체가 기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수행하는 활동의 일부로 조합원과 함께 수행하는 연대경제 내 행위에 대해 면세 규정
- 다만, 제 3자와의 활동 및 단체에 재투자되지 않는 이익금에는 소득세 부과
- 제133조에 지자체의 역할로서 연간 계획과 예산에 PSE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반영하도록 하였고, 생산시설, 유통시설, 시장 등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소매상인들을 보호하도록 명시
- 그 외, 137조에 PSE의 결사를 장려하고, 행정적 장애를 제거하며, 혁신, 수출지원, 교육훈련, 경제통합체(체인 등) 구성 촉진 등을 규정함

11) 퀘벡

- 협동조합 투자계획(Le Régime d'investissement coopératif /RIC))은 우선주를 취득한 조합원과 노동자에게 세제 혜택 부여¹³⁰⁾
- 과세이연배당(La ristourne à impôt différé /RID)은 우선주 형태로 배당금을 받은 조합원이 주식을 처분할때까지 과세를 이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자본금을 유지시키는 역할
- 그 외, 재가서비스 종사자 전문 교육, 사회적경제 틈새시장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조사, 사회적경제 통계 작성 및 지식 전수, 국제교류 등

130) RIC를 통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협동조합은 연평균 5,600명의 조합원 또는 노동자 등으로부터 총 1억 5천 4백만달러의 자금을 조달

6. 사회적가치

1) 프랑스

- 2011년 프랑스 사회연대경제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Economie Sociale et Solidaire, CSESS)의 의뢰로 사회적 영향 측정과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¹³¹⁾

2) 이탈리아

- 사회적기업은 일반적인 회계 문서 외에도 사회적 영향을 평가할 목적으로 수행된 활동을 담은 “사회적 결산서(bilancio sociale)”를 제출해야 함(동법 제 4, 9조).
- 이를 위해 노동 및 사회정책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탈리아 상공회의소 기업 등록부에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표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사명, 사용된 자원, 사업결과,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영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¹³²⁾
- 2019년 이탈리아 노동사회정책부는 제3섹터 주체가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사회적 영향 평가 시행을 위한 지침을 채택(2019년 7월 23일자 법령 제 161959호).
- 이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제3섹터 주체가 사회적 임팩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공통의 기준과 방법론을 정의해,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획된 목표를 달성한 결과를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에게 활동으로 나타난 효과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
- 예산이 100만유로를 초과하는 중장기(최소 18개월) 공공 계약에 관여하는 기관에 적용하며, 공공 조달 절차에는 평가의 준비 및 실행 방법과 시기가 명시되어야 함.

131) Dufour, B. (2016, September). Social impact measurement and public management: how social innovation challenges the policy evaluation paradigm—the case of France. In 8th International Social Innovation Research Conference: "Social Innovation in the 21st Century: Beyond Welfare Capitalism?".

132) European Commission (2020) Social enterprises and their ecosystems in Europe. Updated country report: Italy. Author: Carlo Borzaga.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제3섹터 단체는 금전적 및 비금전적 지표와 지표를 고려하여 양적 및 질적 데이터를 모두 수집하고, 일관성 있고 활동 부문에 적합한 지표를 고려해야 하며 수행되는 활동 및 프로젝트 유형에 가장 적합한 영향력 지표를 선택할 권리가 있음.
- 방법론의 복잡성 정도는 법인의 규모와 법적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가이드라인에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와의 연계성(의도성), 활동과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 간의 관련성,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의 신뢰성, 측정가능성, 비교가능성, 투명성 및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 공개(투명성) 등 사회적 임팩트 측정 프로세스에 적용할 원칙 및 주요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¹³³⁾.
- 이탈리아 토리노의 역량 센터¹³⁴⁾는 임팩트 측정에 관한 가이드스, 교육, 국제적인 방법론 조정 및 개발 등을 통해 임팩트 측정 문화 및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들을 지원
- 해당 지역의 모든 공공 및 민간, 영리 및 비영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사회적 임팩트 측정과 확산을 위한 평가 활동 및 문화 허브로서의 역할을 담당함.
- 특히 역량 센터는 토리노 대학교 경영학과 함께 사회적 영향 평가(Social Impact Evaluation)과정을 제공하고 있음.
- 임팩트 관리 전략 및 측정에 관한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며 이 과정을 토리노 폴리테크닉 대학교, 피카티 밀라노 재단, 코티노 소셜 임팩트 캠퍼스, 테레시아 협동조합 센터 훈련기관과 함께 만들었음¹³⁵⁾.

3) 스페인

- 2018년 3월 공공부문계약법이 개정되어 제1조에서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

13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3.11). 글로벌 이슈리포트 Zoom In. (원문: OECD (2023), Policy Guide on Social Impact Measurement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LEED), OECD Publishing, Paris)

134) 2018년 토리노 상공회의소와 Cottino 재단 간 협의를 통해 설립됐으며 2022년부터 Cottino Social Impact Campus에서 관리하고 있음

13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3.11). 글로벌 이슈리포트 Zoom In. (원문: OECD (2023), Policy Guide on Social Impact Measurement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LEED), OECD Publishing, Paris)

기업의 공공조달 접근을 촉진한다”를 규정¹³⁶⁾

- 이에 따라 공공조달계약에서 사회적 조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라고사, 바르셀로나, 마드리드와 같은 자치단체도 신규조달계약에 사회적 조항을 삽입하기 시작했음.
- 또한, 동 법률은 사회, 문화 및 보건서비스 조달절차에서 공익을 추구하는 기업에게만 입찰을 허용하고 있음¹³⁷⁾

4) 룩셈부르크

- 사회적임팩트기업의 경우 사회적경제로서 목적을 정의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제공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으며(동법 제3조) 이러한 성과지표의 이행실적을 상세히 기재한 재무외적 영향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조합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동법 제5조)
- 성과지표의 이행실적과 관련해서 지표는 최소 2개 이상을 설정해야 하며, 정해진 목록은 없음.
- 기업은 지표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목적 달성 여부와 방법, 정도 등을 평가하고, 달성 현황과 예측치를 임팩트 리포트를 통해 보고해야 함.
- 리포트는 독립적 감사를 거쳐 주주 총회 후 2주 내 노동고용사회연대경제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하고,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관련 부처는 기업을 소환해 이유를 파악하고 지표 조정을 논의함¹³⁸⁾.

5) 벨기에

- 벨기에는 플랑드르 혁신 및 기업가정신 기관이 2016년에 사회혁신팩토리가

136)

<https://www.elsaltodiario.com/mecambio/-la-contratacion-publica-como-politica-de-fomento-de-la-economia-social>

137) OECD (2023), Policy Guide on Legal Frameworks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LEED), OECD Publishing, Paris

138)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3.11). 글로벌 이슈리포트 Zoom In. (원문: OECD (2023), Policy Guide on Social Impact Measurement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LEED), OECD Publishing, Paris)

개발한 임팩트 마법사 도구를 홍보했음¹³⁹⁾.

- 사회적기업은 조직의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행해야 함(본격적인 사회적 영향 보고서는 아님)¹⁴⁰⁾.
- 벨기에 왈로니아의 사회적 임팩트 개발 및 평가(DENIS)프로젝트는 왈로니아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회복을 위한 ‘Get up Wallonia’ 이니셔티브의 일부로 시작
- 사회적 경제 역량 강화를 목표로 각 주체가 사회적 임팩트 평가 프로세스 및 툴을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 프로젝트 목적이며, 4가지 세부 목표를 설정
 - ① 사회적 임팩트 평가 코치 커뮤니티 구축
 - ②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과 사회적 임팩트 평가 공동 연구
 - ③ 신입 코치 교육
 - ④ 관찰된 사회적 임팩트 평가 활동의 문제점 전파
- DENIS 프로젝트는 비영리기관인 ConcertES가 주도로 왈로니아 지역의 7개 파트너(ALEAP, Atout EI, CAIPS, CES-ULiège, CIRTES-UCLouvain, SAW-B 및 UNIPSO)가 참여
- 왈로니아 정부는 사회적 임팩트를 평가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 수를 늘리기 위해 2년 동안(2020~2022년) DENIS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
- 왈로니아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42개의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임팩트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음.
- DENIS 프로젝트의 기반이 되는 임팩트 측정 방법론은 2016~2019년에 INTERRG 프로그램의 재정 지원을 받은 VISES 프로젝트에 의해 개발
- VISES는 프랑스와 벨기에의 사회적 경제 분야 네트워크, 대학 연구 센터, 68개 사회적기업 등이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로 정성적, 정량적 기준을 모두 기반으로 하여 기존 방식로는 측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임팩트 측정 및 입

139) OECD (2021). Social Impact Measurement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LEED), OECD Publishing, Paris

140) Huybrechts, B. (2016). Social enterprises and their eco-systems: A European mapping report. Updated country report: Belgium.

중 방법들을 제안

- 특히 사회적 경제의 특정 요구와 속성, 활동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영향 평가는 집단적으로 설계 및 실행되어야 하며 프로세스 시작부터 가능한 한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 함을 강조함¹⁴¹⁾.

6) 그리스

- 그리스에서는 아테네 시가 2014년부터 사회적 기업을 위한 방법론과 평가 도구를 채택했음¹⁴²⁾.
- 그리스 노동사회보장부 사회연대경제국은 사회연대경제 주체의 사회적 영향력 측정을 위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인 ‘사회적 영향력 측정 도구(Social Impact Measurement Tool)¹⁴³⁾’를 도입
- 사회연대경제 일반 등록소에 등록된 사회연대경제 기업은 매년 이 도구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이 도구를 실행하면 시간에 따른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측정할 수 있으며 사회연대경제 기업은 데이터를 통해 매년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가시적이고 측정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운영 절차를 개선하고 활동을 강화할 수 있음.
- 영국문화원이 유럽위원회 구조개혁지원서비스(SRSS)의 후원으로 그리스 노동·사회보장 및 사회연대부에 제공한 기술 지원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개발된 것으로 이 도구의 방법론은 이전에 Social Value UK에서 개발한 도구를 기반으로 함.
- 이 도구는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오픈소스 기술을 사용하여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연대경제 기업(아테네에 본사를 둔 협동조합)인 Sociality가 디지털 방식으로 개발하였으며, 도구의 개발을 위해 유럽

14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3.11). 글로벌 이슈리포트 Zoom In. (원문: OECD (2023), Policy Guide on Social Impact Measurement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LEED), OECD Publishing, Paris)

142) OECD (2021). Social Impact Measurement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LEED), OECD Publishing, Paris

143) <https://koinonikosantiktupos.gov.gr/#/>

연합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음¹⁴⁴⁾.

- 이 도구가 따르는 방법론¹⁴⁵⁾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7가지 사회적 가치 원칙을 기반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7가지 기본 질문을 기반으로 함.
 - ① 귀사의 사회적 목적은 무엇이며 어떻게 달성하고 있나요?
 - ② 여러분이 하는 일로 인해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③ 이해관계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 ④ 변화와 변화 여부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 ⑤ 여러분의 활동으로 얼마나 많은 변화가 발생하나요?
 - ⑥ 변화를 측정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 ⑦ 변화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소셜 임팩트 매핑 툴에 따라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사회적 임팩트 정의부터 측정 및 평가 수준을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직의 활동이 사람들의 삶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게 되고 임팩트가 더욱 커질 수 있음¹⁴⁶⁾

7) 영국

- 공공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적가치 프레임워크는 크게 2가지
- 2012년 공공서비스(사회적가치)법 도입 이후, 지방정부연합회가 국가 사회적가치 태스크포스(National Social Value Taskforce)를 설립하여 2017년에 개발한 TOM(National Themes, Outcomes and Measures)
- 이후, 2020년 중앙정부에서 새롭게 수립한 사회적가치 모델(Social Value Model)
- TOM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의회의 약 1/3이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

144) OECD (2023), Policy Guide on Social Impact Measurement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LEED), OECD Publishing, Paris

145) <https://koinonikosantiktupos.gov.gr/#!/guide>

14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3.11). 글로벌 이슈리포트 Zoom In. (원문: OECD (2023), Policy Guide on Social Impact Measurement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LEED), OECD Publishing, Paris)

- 사회적가치 모델은 중앙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

표 14. TOM과 사회적가치 지침

구분	Social Value Model	TOM
개요	▶ 중앙정부 공공구매 정책에서 활용 ▶ 대부분의 공공입찰에서 명시하도록 의무화(총 배점 기준의 10% 이상을 사회적가치에 할당)	▶ 지방정부협의회 워킹그룹에서 개발 ▶ 공공구매 최초 기준으로 활용 ▶ 자발적 규정이나 대부분 사용(잉글랜드와 웨일스 의회)
구성	▶ 5개 주제, 8개 성과, 24개 모델	▶ 5개 주제, 48개 성과, 40개 핵심 측정
시행	▶ 2020년 9월 개발 ▶ 2021년 1월 시행	▶ 2017년 개발 후 매년 업데이트
특성	▶ 사회적가치의 질적 평가에 중점 ▶ 화폐가치 평가 또는 정성측정 지양	▶ 양적·질적 사회적가치를 측정하는 사회적가치 측정 표준 제시

147)

8) 멕시코

- 멕시코는 2021년 2021-2024 사회적경제 진흥 프로그램‘을 수립하면서, 국립 사회적경제 연구소(INAES)가 임팩트 모니터링을 진행하도록 규정¹⁴⁸⁾
- 5가지 목표에 따라 세부 과제를 수립하고, 세부 과제별 지표를 설정하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임팩트 측정
- 각 지표는 정의, 측정 주기, 계산 방법, 기준값 및 2024년까지의 목표, 보고 주체 등을 보여주는 표준화된 항목에 따라 공시
- 측정 지표 중 사회적경제 가시성 지표는 사회적경제 주제와 관련된 5개 용어의 인기도를 측정하며, 인구통계학적 연구 대신 구글 트렌드 도구를 활용

147) <https://www.samtaler.co.uk/social-value-hub/blog-national-toms-versus-social-value-model>

148) OECD (2023), Policy Guide on Social Impact Measurement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LEED), OECD Publishing, Paris,

표 15. 멕시코 사회적경제 진흥 프로그램 임팩트 측정 예시

목표 3의 웰빙 목표					
명칭	3.1. 사회적경제 생산성				
목표	사회적경제 원칙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 강화				
정의	사회적경제에 고용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측정				
세분화 수준	국가	측정 주기		연간	
유형	전략적	누적 또는 주기		신문	
측정단위	백분율	데이터 수집기간		기타	
차원	효과성	정보 가용성		12월	
예상 추세	상승	담당부서		복지부 사회적경제연구원	
계산방법	(사회적경제 GDP/사회적경제 고용인원)*100				
기준값 도출을 위한 지표 계산 방법					
변수 이름1	2013년 사회적 경제 고용 (단위:100만)	변수 값1	4.15	변수1 출처	INEGI, 2018
변수이름2	2013년 사회적 경제 GDP (단위: 십억페소)	변수 값2	191.6	변수2 출처	INEGI, 2018
대체 계산방법	(사회적경제 GDP/사회적경제 고용인원)*100 = (191.60/4.15)*100 = 46.20				

기준값 및 목표						
기준선			기준선 참고사항			
가치	46.2		멕시코 사회적 경제 위성 계정에 대한 연구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2018년까지의 후속 연 도에 대한 정보 사용 가능			
연도	2013					
목표 2024			2024년 목표 참고사항			
63			연평균 3% 성장률 가정			
복지 목표 또는 벤치마크의 시계열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46.2					
중간 목표						
2020	2021	2022	2023	2024		
56.82	58.53	60.29	62.09	63		

9) 캐나다¹⁴⁹⁾

- 캐나다 연방정부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해결하는 사회·환경적 문제를 측정하여 UN2030 아젠다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혁신 및 사회금융 전략(Social Innovation and Social Finance(SI/SF) Strategy) 수립
- SI/SF 전략은 사회적경제가 강력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친 사회적경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사회적경제기업의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은 시장을 형성하고, 보다 규모있는 사회적 금융 및 생태계에 참여
-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이 지원된 프로젝트 중 하나는 캐나다 오타와 칼턴 대학교 연구원들의 임팩트측정에 대한 공동접근법(Common approach to Impact Measurement)
- 임팩트 측정에 대한 공동 접근법은 재단, 보조금 제공자, 임팩트 투자자의 요구에 의한 임팩트 측정이라는 초점에서 벗어나 임팩트 측정의 토대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구성
- 공통 기반(Common Foundations), 공통 형식(Common Form), 공통 영향 데이터 표준(Common Impact Data Standard), 공통 구조(Common Framework)의 4가지 커뮤니티 중심 표준으로 구성¹⁵⁰⁾
- ① 공통 기반(Common Foundations)은 변경, 지표, 정보수집, 영향 측정, 활용 5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최소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
- ② 공통 형식(Common Form)은 조직의 정량·정성 정보를 기록하여 임팩트 측정시 맥락을 고려할 수 있도록 구성
- ③ 공통 영향 데이터 표준(Common Impact Data Standard)은 IMP(Impact Management Project)에서 식별한 규범에 따라 누가, 무엇을, 얼마만큼, 기여도 및 영향 위험을 나타내는 프로그램
- ④ 공통 구조(Common Framework)는 SDGs 및 캐나다 웰빙 지수와 같이 조직에

149) OECD (2023), Policy Guide on Social Impact Measurement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LEED), OECD Publishing, Paris,

150) <https://www.commonapproach.org/>

적합한 지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도구

4장

해외 사회적경제 주요국 관련 제도 및 정책 조사 조사 결과

1. 조사결과 종합
2. 시사점

1. 조사결과 종합

1)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

□ 사회적경제 발전과정

- 10개 국가와 1개 지방정부(퀘벡) 대상 사회적경제 관련 제도 및 정책 조사 결과, 발전과정에서는 많은 유사성이 확인됨
-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적경제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부터 등장하였으며, 주로 협동조합 또는 공제조합(영국)의 형태로 사회적으로 배제되었거나 취약한 계층의 자조를 지원
- 1980년대를 전후로 많은 국가에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가 폭넓게 확산되었으며, 이 시기에 사회적기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경제조직이 등장하면서 2000년 이후 제도화
- 유럽에서는 2005년 영국이 공동체이익회사(CIC)법을 제정하면서 사회적기업을 제도화하였고, 이후,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2016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법률로 규정
- 남미에서는 연대경제의 전통으로 인해, 민중연대경제 또는 사회연대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멕시코와 에콰도르 모두 드물게 헌법에 사회적경제를 직·간접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특징

□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 국가별 특성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규정도 상이

가) 사회적(경제)기업 공통 특성

- ① 사회적 목적
- ② 거래활동을 통한 운영
- ③ 이익의 사유화 제한 또는 금지
- ④ 거버넌스 구조

나) 법인 형태

- ① 비영리 단체 또는 결사체 형태가 가장 많음
- ② 별도의 법인 형태(영국)
- ③ 주식회사의 경우 이익 배당 제한

다) 사회적(경제)기업 임금 조건 규정

- ① 조직 내부의 과도한 임금격차 제한(프랑스(1:7), 이탈리아(1:8), 룩셈부르크(1:6))
- ② 유사직종 임금과 형평성 고려(이탈리아)

라)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및 등록

- ① 인증(5개국) - 프랑스(ESUS), 룩셈부르크(사회적임팩트기업), 영국(CIC), 덴마크(RSV), 에콰도르(PSE)
- ② 등록(3개국) - 이탈리아, 벨기에, 그리스
- ③ 기타(별도의 인증·등록 없음) - 스페인, 멕시코, 퀘벡

○ 모든 국가에서 오래된 사회적경제 전통에 따라 인증 및 등록된 사회적(경제)기업과 별도로 많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있는 것으로 추정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체계

- 모든 국가에서 법률에 따라 사회적경제를 총괄하는 부서 및 위원회가 명시되어있지만, 많은 경우 조정, 협의, 자문 및 논의 기능
-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민간의 재단, 대학, 단체 및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반해, 그리스의 경우 노동·사회보장 및 사회연대부에 사회연대경제 국가위원회 및 장관 직속의 특별 사무국을 설치하여 사회적경제 정책 개발, 모니터링 등의 기능 수행
- 멕시코와 에콰도르는 각각 국립사회적경제연구원(INAES) 및 민중연대감독원(SPSE)을 설치하여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 및 실행 등의 역할을 담당
- 퀘벡은 민간협력기구인 상티에와 지역네트워크가 경제혁신부와 협의를 통해 정책을 개발하며, 퀘벡주 정부 역시 사회적경제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네트워크의 활동을 지원

- 멕시코와 퀘백의 경우, 4~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예산을 편성하며 적극 지원

2)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 재정지원 및 직접지원

- 조사대상국 중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 관련 법에 재정지원을 명시한 국가는 없음
- 일부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경우 연계된 법률을 통해 별도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으며, 룩셈부르크의 경우 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됨
- 많은 경우, 법에 근거한 별도의 정책 또는 프로그램, 별도의 기금 등과 연계하여 보조금이나 프로젝트 성격의 보조금을 사회적기업에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

□ 판로지원

가) 판로지원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됨

- ① 사회적경제 관련 법령에 공공조달 명시(1개국) - 에콰도르
※ 프랑스는 2019년 법 개정으로 조항 삭제
- ② 공공조달 관련 법령에 사회적경제 지원 명시(3개국) - 스페인, 영국, 그리스
- ③ 기타(별도 지침 또는 정책으로 장려) - 프랑스, 벨기에, 퀘벡

나) 다만, 공공조달 제도에 사회적경제 조직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국가는 스페인과 에콰도르, 그리스로 확인되며, 나머지 국가(프랑스, 벨기에, 영국)는 사회적 가치 또는 환경적 가치 등으로 표현

□ 경영지원

- 사회적경제 관련 법령에 별도의 경영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국가는 에콰도르가 유일함
- 많은 국가에서 별도의 경영서비스 지원을 명시하는 제도는 확인하지 못함

- 스페인의 경우 청년 고용 이니셔티브 또는 ESF프로그램에 사회적경제의 참여를 열어두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위기에 처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한시적 경영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중
- 멕시코와 퀘백은 역량 개발 및 전문 기술 습득을 중장기 전략계획에 반영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을 지원

□ 금융지원

- 금융지원은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기금 및 대출 지원, 사회적금융 생태계 활성화 등으로 구분

가)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방식

- ① 프랑스(IR-PME)
- ② 영국(사회적투자 감세제도)
- ③ 퀘백: 조합원 및 노동자가 우선주를 보유한 경우 세제혜택 부여 및 과세 이연

나) 기금 및 대출 지원

- ① 이탈리아(연대기금 등)
- ② 퀘백(신용보증기금 등)
- ③ 영국(BSC 및 민간 재단 등)

* 각 기금별 주요 구성 및 활용에 대해서는 후술

다) 사회투자채권 방식 지원

- ① 프랑스(사회적 영향 계약)
- ② 벨기에 및 영국(소셜임팩트본드)

라) 사회적금융 생태계 활성화

- ① 사회적금융기관 역량강화 및 상품 개발 - 룩셈부르크, 멕시코, 에콰도르
- ② 퀘백 : 사회적경제기업 자산화 프로그램 등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상품의 다양화

□ 세제혜택 및 기타

○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에 다양한 세제 혜택 수단 활용

가) 부가가치세율 감면

- ① 프랑스 - 실제 수행 활동에 따라 결정
- ② 이탈리아 - A유형 사회적협동조합이 취약계층에게 서비스 제공시 5% 적용
- ③ 덴마크 - 공익법인으로 인정된 경우 부가세 완화(19% → 5%)
- ④ 멕시코 - 비영리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기부금에 대해 부가세 면제

나) 소득세 감면

- ① 프랑스 - 배당 제한 및 이윤 재투자할 경우 소득세 미과세
- ② 이탈리아 - 연간 순이익의 3% 미만 지분을 기금에 할당할 경우 소득세 공제
- ③ 스페인 - 비영리단체로 인정받은 사회적이니셔티브협동조합의 최고 소득세율 제한
- ④ 벨기에 - 배당 제한 및 이윤 재투자할 경우 소득세 미과세
- ⑤ 에콰도르 - 조합원과 함께하는 연대경제 내 행위 면세

다) 법인세 감면

- ① 이탈리아 - 사회적경제 자격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은 법인세 감면
- ② 그리스 - 유한책임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법인세 면제
- ③ 덴마크 - 공익단체가 비영리 활동 및 사회적 목적추구 활동에 대해 법인세 감면

라) 기타

- ① 사회보험료 등 감면 -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 ② 지방세 감면 - 그리스, 영국
- ③ 기타 - 멕시코(재산세), 스페인(사업활동세), 벨기에(이자소득세) 등

□ 사회적 가치

○ 조사대상국 중 에콰도르와 덴마크를 제외하고 사회적 가치 또는 임팩트를 자

체적으로 측정하거나 측정 도구를 개발 중

- 다른 국가들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임팩트를 측정하는데 반해, 멕시코는 사회적경제 정책의 임팩트를 측정하는 것이 특징
- 이탈리아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결산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룩셈부르크의 사회적임팩트기업은 성과지표의 이행실적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 영국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각각의 사회적가치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공공조달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그리스의 사회적경제 기업도 의무적으로 영향력 측정 도구를 작성

3) 사회적기업이 활용가능한 중소기업지원제도(유럽)

□ 유럽연합 중소기업 정책

- 유럽연합의 중소기업 정책은 1980년대 초반 유럽 각국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중소기업 부흥을 통한 고용 창출 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
- 1983년 유럽의회와 유럽 집행위원회가 ‘유럽중소기업과 수공업을 위한 해(European year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craft industry)’를 발표하면서 시작
- 2000년대 들어서 ‘리스본 어젠다(Lisbon Agenda)’를 발표하며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운영하기 더 쉬운 환경을 구축하고 기업들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며, 10년 기간의 목표를 정해 발표하기로 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중소기업협의회와 유럽노동조합총연맹 등 중소기업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2008년 6월 유럽연합의 중소기업법(SBA, Small Business Act)를 발표
- SBA에 따라 유럽연합과 회원국은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 완화, 금융 접근의 활성화 및 시장 접근 여건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¹⁵¹⁾

□ 유럽연합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제도

- 유럽전략투자기금(Europe Fund for Strategic Investment, EFSI)¹⁵²⁾: 유럽연합은 1994년 역내 회원국과 주변국들의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유럽투자기금(EIF: European Investment Fund)을 설립
- 동 펀드는 중소기업 대출로 직접 제공하지 않고 벤처캐피탈을 이용한 직접투자자와 민간은행 대출보증 형태로 운용하는 종자돈으로 활용 중

151) 더퍼블릭뉴스 (2020.5.4). [정책-외국정책사례] 유럽연합의 중소기업지원정책. 더퍼블릭뉴스
<https://www.thepub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61>

152)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investment-plan/strategic-investments-fund/>
<https://www.eib.org/en/products/mandates-partnerships/efsi/index.htm>
국제금융이슈(2014.12). 유럽투자전략기금, EU의 경제난국 탈출의 묘수가 될 것인가?

- EU 예산의 자금 지원을 포함한 공공 자금을 사용하여 EU에서 수행되는 광범위한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투자를 동원하는 것을 돕는 것이 목표
- 2017년 5000억 유로의 추가 투자를 목표로 기금이 확대되었고, 약 150만개 중소기업이 수혜를 받고 있는 중
- 기업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Programme for the 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and SMEs, COSME)는 2013년 12월 11일 채택되어 2014~2020년 기간 동안 23억 유로의 금융 지원 시행
- 중소기업 대출 증진을 위해 금융 중개자와 직접 또는 기타 위험 분담 계약을 제공하였으며, COSME 예산 중 13억 유로가 금융상품에 할당되었음¹⁵³⁾.

□ 각국의 사회적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

가) 프랑스

- 2017년에 지난 15년 동안 개발된 수많은 혁신 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조달 활동과 중소기업 지원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책임 구매 촉진 제도(SPAR)를 채택

나) 이탈리아

-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은 2000년부터 운영되며 경제개발부에서 관리
- 중소기업은 기금이 보증하는 자원에 대한 추가 보증(예 : 보증서 또는 보험 증권)을 제공 할 의무없이 자금을 확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갖게 되며, 사회적기업도 활용 가능¹⁵⁴⁾

다) 스페인

- 2018년 3월 공공부문계약법이 개정되어 제1조에서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공공조달 접근을 촉진한다”를 규정함¹⁵⁵⁾

153) <https://www.europarl.europa.eu/factsheets/en/sheet/63/small-and-medium-sized-enterprises>

154) European Commission (2020) Social enterprises and their ecosystems in Europe. Updated country report: Italy. Author: Carlo Borzaga.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155)

<https://www.elsaltodiario.com/mecambio/-la-contratacion-publica-como-politica-de-fomento-de-la-economia-social>

4) 주요 사회적경제 기금 특징

□ 프랑스(SOCODEN)

- 프랑스 협동조합 협회(Les Societes Cooperatives et Participatives)가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목적은 신생 협동조합과 성장기 협동조합 지원
- 프랑스 노동자협동조합이 조합 1년 총 수입의 0.1%를 회비로 걷어 설립한 금융관련 상호협동조합
- 협동조합에 대한 조합원 투자를 위해 개인 대출을 제공하며, 협동조합에는 중기(中期) 운영자금을 대출
- 스코핀베스트(Scopinvest)는 출자증권과 전환사채를 구매하고, 신용협동조합인 소피스콥(Sofiscop)은 신용보증을 제공
- 위와 같은 방식으로 출자증권 3천만 유로, 대출 2천만 유로를 제공하고, 매년 보증 100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 오고 있음¹⁵⁶⁾

□ 이탈리아(연대기금)

- 연대기금(Fondi Mutualistici)은 이탈리아가 민영화 추세에 반하여 협동조합 부문의 역량강화 및 결속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제59/1992호에 따라 조성한 기금으로 공식 명칭은 ‘협동조합 진흥 발전을 위한 상호부조기금’
- 기금은 기존 및 신설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시스템 전반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연대기금회원으로 가입한 협동조합과 컨소시엄은 매년 순이익의 3%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출연
- 각 협동조합은 (연대기금이 할당된) 협동조합연합회에 기금을 납부하거나 정부에게 직접 납부하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협동조합은 정부로부터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¹⁵⁷⁾

156) A. Michael Andrews (2015) Survey of Co-operative Capital: Unprecedented List of Co-operative capital Tools(번역협동조합 역).

157) OECD (2023), Policy Guide on Legal Frameworks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LEED), OECD Publishing, Paris

- 이에 따라 각 협동조합 전국조직마다 연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레가쿱(LEGA)의 경우는 쿠퍼드(Coopfond)를 운영
- 2019년 기준 레가의 쿠퍼드에는 4억 9,100만 유로가 적립되어 있으며 쿠퍼드로 지원한 프로젝트가 768개가 되고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프로젝트는 250만 유로
- 쿠퍼드가 하는 가장 큰 일은 자금이 필요한 협동조합이나 신생 협동조합 벤처에 대출해주거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
- 금액 기준으로 절반 이상이 투자 형태이며, 다음으로 대출 프로젝트 순
- 대출은 무이자부터 책정되며, 프로젝트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중이며, 프로젝트 종류는 다음과 같음¹⁵⁸⁾
 - ① 복지 개혁, 일자리 보장,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목적이 높은 사업
 - ② 해외 진출을 포함한 신규 시장 개척, 신규 기술 도입 등에 대한 사업
 - ③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른 협동조합과의 합병을 추진하는 사업
 - ④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노동자들이 인수하여 협동조합으로 전환 지원
 - ⑤ 협동조합 창업을 지원

□ 영국(빅소사이어티 캐피털)

- Big Society Capital은 세계 최초의 사회적 금융 도매기관
- 2008년에 휴면예금 관련 법률(the Dormant Account act)이 제정되면서 휴면예금을 주요 재원으로 한 사회투자은행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 당시 캐머런 수상이 'Big Society Agenda'를 정치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Big Society Capital이라는 명칭 부여¹⁵⁹⁾

158) 서진석(2019.6.22). 이탈리아 협동조합(6) : 전국조직 '레가쿱'과 연대기금

<https://m.blog.naver.com/campsis/221568119302>

159)

<https://www.makehope.org/%EC%98%81%EA%B5%AD-%EC%82%AC%ED%9A%8C%EC%A0%81%EA%B8%88%EC%9C%B5%EA%B8%B0%EA%B4%80-%ED%83%90%EB%B0%A9%EA%B8%B0-%E2%91%A1-big-society-capital/>

- 2012년, 영국 정부의 주도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민·관이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Big Society Capital이 출범
- 영국의 주요 은행 4곳의 휴면 자산과 투자를 받아 자본이 조성
- 초기 자본은 휴면 은행 계좌에서 4억 파운드, 바클레이즈, HSBC, 로이드 बैं킹 그룹, 넷웨스트 그룹 등에서 2억 파운드를 투입하여 6억 2,500만 파운드로 조성
- 이후 기관 및 기타 투자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자본을 유치하여, 2022년 64억 파운드로 성장
- 200여 투자 기관들과 함께 2천여개의 사회적경제 및 자선 기관에게 26억 파운드 이상을 공급하여 사회·환경적 임팩트 창출
- 영국은 2025년까지 영국 내 임팩트 투자 시장을 100~150억 파운드 규모까지 확장하겠다고 발표¹⁶⁰⁾

□ 퀘백¹⁶¹⁾

- 퀘백의 사회적 금융은 사회·경제·환경적 가치를 추구하는 금융기관과 조직들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사회책임투자(Investment Responsible)라고 표현하며, 목적과 투자대상에 따라 연대금융(Finance solidaire)과 발전자본(Capital de developpement)으로 구분
- 연대금융은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창업과 성장에 투자
- 발전자본은 고용창출과 유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향하는 지역의 중소기업들에게 투자하는 기금

160) <https://www.svsfund.org/news/activity/297>

Big Society Capital (2022) Ten Years of Investing for Impact

161) 이미옥(2021). 사회적 경제를 넘어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힘, 퀘백주 사회적 금융의 현황과 특징. 사회가치연대기금

표 16. 사회책임투자 성장 추이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06년	2010년	2013년	2016년	2019년
발전자본	3,907	12,191	10,469	13,236	35,552
연대금융	387	474	617	812	1,188
총 계	4,294	12,665	11,086	14,048	36,740

○ 연대금융 주요 특징

가) 연대금융 목적

- ①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회원 또는 공동체를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과 사회적 목적을 가진 협동조합들의 창립과 양적 성장에 기여하는 것
- ②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설립을 통해 모든 지역에서 사회적경제기업가들의 발전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것
- ③ 기업의 경제사업의 지속성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개발하고 지원
- ④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재정적, 기술적 지원
- ⑤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조하고 강화하도록 지원

나) 연대금융 투자기준

- ① 경제사업이 사회적 목적(회원 및 조합원 또는 지역사회에 기여)을 갖는가
- ② 집단적 운영 구조를 갖고 있는가
- ③ 국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 ④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와 과정을 갖추고 있는가
- ⑤ 수익증대보다 노동을 존중하고 직원과 조합원의 성장을 돕는가
- ⑥ 기업활동에 참여, 연대, 민주주의, 투명성, 개인과 조직의 집단적 책임에 대한 가치가 담보되어 있는가

다) 연대금융 구성

표 17. 연대금융조직 현황

(단위 : 백만달러)

연대금융 조직	총 자산	투자액
데자르댕 연대경제금고 Caisse d'économie solidaire Desjardins	1,097	659
퀘벡투자공사 Investissement Québec 경제발전기금 FDE11	380.5	380.5
샹티에 신탁기금 Fiducie Chantier de l'économie sociale	58	58
협동조합 발전기금 Fonds Essor et Coopération	23	23
필락시옹 Filaction	36	18
사회주택 개선기금 Fonds ARHC 학생주택투자기금 FILE 콩코르디아대학생주택커뮤니티기금 CLÉ	47	18
몬트리올투자기금 FIM II, III, IV 몬트리올사회주택기금 FAM (Bâtir son quartier)	13	13
퀘벡사회투자네트워크 Réseau de l'investissement social du Québec	18	9
소액투자네트워크 Réseau MicroEntreprendre	12	8
커뮤니티 채권 Obligations communautaires ¹²	n/a	1.5
총액	1,684.5	1,188

162)

○ 발전자본 주요 특징

- ① 벤처자본의 한 형태이지만, 사회적경제기업, 중소기업 등에 투자하며 수익 최대화보다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고용창출을 건인
- ② 신생기업의 설립과 발전을 촉진하고, 위험기업을 인수 및 유지
- ③ 지역 내 중소민간기업에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며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 실행

○ 발전자본 구성

162) X. Hubert Rioux (2020)Portrait 2020 de la finance responsable au Québec, p.29

표 18. 발전자본 현황

(단위 : 백만달러)

연대금융 조직	총 자산	투자액
퀘백노동자연합연대기금 Fonds solidaires de FTQ	12,582	11,920
퀘백전국노동조합총연맹발전기금 Foncdaction de CSN		
퀘백투자공사 Investissement Québec	9,560	9,560
캐나다 개발은행 Banque de developpement du Canada	8,851	8,851
경제발전기금 Fonds du developpement economique	6,841	6,841
천연자원관련기금 Fonds Capital Mines Hydrocarbures		
데자르댕 신탁 Desjardins Mouvement	2,600	2,100
데자르댕지역발전기금 Capital de risque et cooperatif Desjardins		
친환경기업지원기금 Cycle Capital	490	180
문화기업발전지원협회 Societe de developpement des entreprises culturelles	102	49
퀘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기금 Fonds d'action quebécois pour le developpement durable	45	45
농업금융자금 Capital Financiere Agricole	16	16
여성기업가지원기금 Femmessor (Fonds FQ)	19	14
창업 및 기술혁신지원자금 ACET Capital	11	11
총계	41,117	39,587
순 투자액		35,416
기초/광역자치단체 발전자본	총 자산	투자액
기초/광역지자체투자기금 Fonds local d'investissement	149	92
지역연대기금 Fonds locaux de solidarite	40	30
지역사회발전지원센터네트워크&지역기업지원센터 Reseau des Societe(s) d'aide au developpement des collectivites & Centre(s) d'aide aux entreprises	280	14
총 계	469	136
순 투자액		136
발전자본 전체 총계		35,552

표 19. 연대금융과 발전자본의 구분

구 분	연대금융	발전자본
성격	•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지역공동체 등 사회적경제조직만을 위한 금융	• 사회경제적 특징의 벤처자본
투자정책	• 비영리단체와 협동조합 지원 • 사회 및 공동체 주택 지원 • 소액 금융	• 지방과 지역발전을 위한 자본 • 고용과 노동자 참여 • 환경 개선
주요 조직	• 상티에 신탁기금 • 필락시옹 • 퀘백사회투자네트워크 • 데자르덴연대경제금고	• 퀘백전국노동조합총연맹 발전기금 • 지역투자기금 • 데자르덴 신탁 • 데자르덴지역발전기금
동시 활동조직	• 퀘백노동자연합회 연대기금 • 풍닥시옹, 데자르덴신탁과 데자르덴 지역발전기금(CRCD) • 퀘백투자공사와 경제발전기금 • 지역투자기금 • 57개 지역공동체발전지원센터 • 10개 기업지원센터 • 캐나다경제발전 퀘백지역센터 • 협동조합 발전기금 • 소액대출네트워크의 17개 회원조직기관 • 필락시옹	
법인 형태	• 대부분 비영리법인 • 합자회사 • 국영기업 • 협동조합	• 비영리법인 • 합자회사 • 국영기업 • 주식자본회사

○ 주요 기금별 설립 및 주요 특징

① 협동조합 기금

표 20. 협동조합 기금 주요 특징

조직명	설립	주요 특징
데자르덴신탁	1900	• 북미 최초의 저축신용협동조합 • 1906년 협동조합 법안 채택으로 법적지위 획득 • 연합조직인 데자르덴운동에 313개 회원조합 • 조합원들의 출자와 예탁금으로 운용 • 지역공동체에 뿌리가 깊고 지역개발과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프로젝트에 투자

데자르덴연대경제금고	1971	• 데자르덴신탁과 퀘백주노동조합총연맹(CSN)이 함께 설립 • 조합원들의 출자 및 예탁금으로 운용 • 사회적경제기업 창립과 발전 지원을 통한 사회정의와 연대 실천을 사명으로하는 투자 전문기관 • 사회주택, 사회적경제기업, 문화, 노동조합에 투자
데자르덴지역발전기금	2001	• 데자르덴 신탁에서 설립 • 퀘백지역 협동조합이나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에 최소 60%투자 의무화를 위해 설립 • 최소 7년간 투자조건으로 투자의 40% 세액공제
협동조합발전기금	2013	• 데자르덴지역발전기금과 퀘백정부가 자본조성하여 설립 • 협동조합 창립과 발전에 중점 지원

② 노동운동 기금

표 21. 노동운동 기금 주요 특징

조직명	설립	주요 특징
퀘백노동자연합연대기금	1983	• 퀘백노동자연합회에서 고용창출과 유지를 위해 설립한 퀘백주 최초의 노동조합기금 •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에서 세액공제 지원
퀘백전국노동조합총연맹 발전기금	1995	• 퀘백전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고용창출과 유지를 위해 설립 • 사회적경제기업, 노동자교육, 친환경지역기업에 투자
필락시옹	2000	• 퀘백전국노동조합총연맹 발전기금이 지역공동체기금과 지역발전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 • 여성, 소수인종, 여행, 문화분야에 주로 투자
플렉시기금	2019	• 퀘백노동자연합연대기금에서 설립한 퇴직저축기금

③ 정부 기금

표 22. 정부기금 주요 특징

조직명	설립	주요 특징
퀘백투자공사	1998	• 퀘백주 최초이자 캐나다 유일 사회적경제 투자국영기업 • 사회적경제 자산화를 위해 두가지 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경제기업 자산화 / 일반기업 인수지원 • 비영리단체, 협동조합만 대상으로 최대 25년까지 장기 자금조달, 최소 5만달러 투자, 대출보증

IMPLIQ프로그램	2012	• 정부가 퀘백투자공사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의 인내자본 형성에 지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퀘백실천기금FAQDD	2000	• 주정부 자금 • 17개 지역에서 750개 이상 프로젝트 지원 • 지속가능한 발전 기업, 단체, 조직에 지원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대학, 지자체 등)

④ 공동체 기금(시민단체 등이 조성)

표 23. 공동체 기금 주요 특징

조직명	설립	주요 특징
소액투자네트워크	1987	• 커뮤니티투자기금으로 초소형기업,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재정지원 • 500~2,000달러 사이의 대출 제공
커뮤니티 채권	2017	• 사회연대경제혁신연구소(TIESS)에서 크라우드펀딩으로 조성 • 사회금융 혁신과 사회적경제 성장 가속화를 위한 목적

⑤ 혼합 기금(정부·민간 등이 조성하고 시민사회가 관리하는 기금)

표 24. 혼합 기금 주요 특징

조직명	설립	주요 특징
퀘백사회투자네트워크 (RISQ)	1997	• 상티에와 퀘백주정부가 설립 • 주정부가 초기 자본의 50%를 투자 • 사회적경제기업들 전용 최초의 투자기금 • 담보 또는 무담보 대출, 대출보증, 보조금 등 병행 • 컨설팅을 통한 기술지원
상티에 신탁기금	2007	•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위한 인내자본 • 퀘백전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정부투자자로 조성
친환경기업지원기금	2009	• 노동조합연대, 발전기금과 주정부기금이 함께 설립 • 임팩트 투자, 친환경기업지원을 위한 벤처캐피탈
창업및기술혁신지원자금	2011	• 주정부, 연방정부, 민간은행, 대학 등이 출연
지역사회주택보수기금	2016	• 상티에 신탁기금, 퀘백노동자연합연대기금, 맥코넬패밀리재단(민간)이 함께 설립 • 주택협동조합 및 사회주택의 집세안정과 유지보수 지원

INNOGEC기금	2017	• 주정부, 풍닥시옹, 필락시옹, 데자르맹연대경제금고, 몬트리올기업가지원기금이 협력으로 출범 • 상환 필요없는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 기금 • 조직진단, 전략수립, 시장분석 및 사업개발, 커뮤니케이션 등에 대한 자문 및 인력지원
에코리더기금	2019	• 주정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퀘백인 행동기금, 지속가능발전과 친환경에너지 퀘백센터가 공동 설립 • 기업의 친환경적이고 사회책임있는 사업실행 홍보 및 기술지원을 위해 투자

⑥ 민간기금

표 25. 민간 기금 주요 특징

조직명	설립	주요 특징
몬트리올 투자기금	1997	• 퀘백 노동조합기금, 신협, 캐나다은행이 초기 참여 • 맥코넬패밀리재단 등 여러 민간기금이 참여하면서 확대 • 협동조합주택 및 비영리단체주택을 위한 부동산 구매와 보수에 투자 • 비영리단체가 기금 관리 및 운영

2. 시사점

1) 사회적경제 정책 흐름

- 대부분의 조사대상국가에서 사회적경제는 민간에서부터 성장하면서, 정부 정책의 필요성에 의해 제도화 단계에서 확산하는 과정으로 발전
- 다만, 일부 국가(영국, 덴마크, 퀘벡 등)에서는 정치환경의 변화로 정책의 우선순위가 조정되면서, 기존의 사회적경제 정책이 약화되는 현상이 발생
- 이러한 정책의 조정국면에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지탱해준 것은 민간의 다양한 지원체계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 공동체
- 많은 국가들이 사회적경제 제도화 이전부터 풀뿌리 조직을 기반으로 사회적경제 활동을 전개해오면서, 지역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지방정부 역시 이들의 필요성을 깨달으며 고유한 정책사업 추진
- 영국은 2010년 신노동당 정부에서 보수당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중앙정부의 공식적인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이 중단되었지만, 영국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사회적가치법, 지역분권 정책 등을 활용하여 지방정부 및 지역공동체와 함께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덴마크 역시, 2015년 정권의 교체와 함께 중앙정부의 지원이 중단되었지만, 사회적기업의 필요성을 느낀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의 기금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적기업 성장에 기여
- 다른 국가들에서도 정치환경의 변화와 무관하게 정책의 흐름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변화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추세
- 사회적경제가 발전한 많은 국가들의 정책 흐름에 따라 국내 사회적경제 정책 역시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역 주도로 변화 필요
- 중앙정부 정책은 지역의 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기보다 표준화를 통한 확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역문제의 실질적 해소에 한계
- 따라서, 중앙정부는 제도적 뒷받침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에 사회적경제기업을 연계하여 지역문제

해결에 적합한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지원 필요

2) 사회적경제 지원 체계

- 조사대상국가 중 에콰도르를 제외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지 않았으나, 정책 수립시 사회적경제조직 등과 협력을 통해 수립할 것을 명시
- 또한, 남미 2개 국가를 제외하고 다양한 민간 자원들을 육성하여 정부 주도의 지원 체계를 넘어 지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
- 이로 인해 정책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었고, 오히려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
- 국가별 법규 체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탄력적 운영의 여지와, 포트폴리오 다각화는 국내 사회적경제 지원체계에도 필요한 요소
- 사회적경제의 초기 육성단계를 넘어 중장기 성장전략을 고민하는 단계에서 일률적 지원보다 당사자 조직의 참여를 통한 유연한 지원체계 구축이 중요
- 퀘백, 멕시코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 정책 평가 요소들을 참고하여, 평가에 기반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마련 필요

3) 사회적경제기업 특성

- 사회적기업의 인증·등록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상이하나, 많은 국가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핵심 가치를 공통적으로 강조
- 또한, 대부분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주식회사 형태보다 결사체, 비영리단체 등 커뮤니티 기반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규모 조직 형태
 - 퀘백 : 65%는 직원수 10명 미만, 64%는 매출액 50억달러 미만
 - 영국 : 전체 사회적기업 중 유급근로자 고용하는 기업 비율 29%
 - 룩셈부르크 : 사회적경제기업 중 비영리 조직 비중 76.2% 등

- 이처럼 많은 국가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가치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커뮤니티 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국내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을 새롭게 조망하는 과정 필요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방식을 매출, 고용 등 양적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곳곳에서 촘촘히 활동할 수 있는 가치 기반 조직으로 패러다임 전환
- 특히, 영국 DCMS의 사회적기업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사회적기업을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통계 마련 필요

4) 사회적경제 지원제도

- 대부분 직접 재정지원방식보다 다양한 프로젝트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지원 과정에서 컨설팅 및 기술지원 등을 연계하여 자연스럽게 역량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유도
- 프로젝트 지원은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경우와 민간 기금 등을 통해 지원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성과 측정을 통해 프로젝트 지속화 여부 결정
-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투자자, 근로자, 조합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세제혜택 운영 중
- 판로지원의 경우, 사회적경제 관련 법에 명시하기 보다 공공조달 관련 법에 명시하여 활용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에콰도르에서는 민간 판로(소매업)에서도 사회적경제 쿼터를 적용
-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만 한정해서 지원하기보다 사회적가치에 부합한 비영리단체, 중소기업 등까지 포괄하는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도 확인
- 지원제도는 국가별 정책 특성, 조세 구조, 금융 인프라 등 고려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려움
- 다만,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된 국가의 경우, 지원 생태계가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어서 체계화된 지원 과정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 성장 및 유지에 기여

- 국내 사회적경제 지원 생태계는 아직 정부 의존도가 높고, 체계화된 지원보다 단계적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 기업의 다양화에 기여하기 어려움
- 성장단계에 초점을 맞춘 지원 생태계보다, 기업의 유지와 이를 통한 지속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지원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
- 정부 주도의 지원 생태계가 아닌, 민간에서 지원 조직들이 형성되어 기업들의 안정적 운영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필요

5) 사회적가치

- 에콰도르를 제외하고, 전체 조사대상국이 사회적가치 측정을 주요한 관심사이자 정책 수단으로 활용중
- 영국이 사회적가치법을 제정하면서 사회적가치를 측정하여 공공입찰에 반영하고 있으며, 룩셈부르크와 이탈리아, 그리스 등도 의무적으로 사회적가치를 측정하도록 운영중
- 다만,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측정 도구는 없으며, 대부분 도입 초기 단계로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
- 국내에서도 SVI, IMP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가치 측정을 진행중이나, 아직 공공조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데 한계
- 향후, 공공조달, 프로젝트 참여 등 다양한 정책지원 수단에 적용하여, 사회적가치 측정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

부록

해외 사회적경제 주요국 관련 제도 및 정책 조사

국가별 요약

해외 사회적경제 주요국 관련 제도 및 정책 조사 요약

국가	사회적기업 개요		
	사회적경제 맥락	사회적기업 현황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프랑스	▶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사회적경제관 설치 ▶ 2011년 공동체이익협동조합회사법 제정, 사회적기업의 새로운 법적 형태인 SCIC(공동체이익협동조합) 규정 ▶ 2014년에 사회연대경제법 제정. ESUS 라벨(공익사업 사회적기업) 도입 ▶ 2018년 사회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French Impact 출범	▶ 2021년 기준 약 200,000개의 기업이 238만 명의 직원을 고용 ▶ 프랑스 GDP의 10%, 민간 일자리의 약 14%를 차지 ▶ ESUS의 경우 2019년 12월 기준 1,709개 ▶ 결사체(1,183개), 사회적기업(354개), 협동조합(164개), 재단(7개), 공제조합(2개)	▶ 민간 협치 기관으로 프랑스 사회연대경제 고등위원회와 프랑스 사회연대경제 회의를 규정 ▶ 최소 2년마다 중앙·지방정부 관계자는 사회적 경제에 관한 지역 회의를 조직하며, 논의 결과는 사회연대경제를 위한 지역 공공정책 개발 제안 수립으로 연결
이탈리아	▶ 1970년대 신빈곤층(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노숙자 등) 문제가 발생하며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운동이 시작 ▶ 1991년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한 법률(381/1991)을 제정 ▶ 2006년에 사회적기업에 관한 법률(155/2006)을 제정 및 2017년 법령 개정	▶ 사회적경제기업은 2017년 기준 102,000개 이상으로 추정 ▶ 유급 근로자 수는 약 90만 명, 연간 매출액은 42,700백만 유로 ▶ 사회적기업은 2013년 이탈리아 상공회의소의 기업 등록부 "L" 섹션에 등록된 개수로 774개에서 2018년 1,693개로 증가함	▶ 노동사회정책부에서 사회적 기업 모니터링 활동 연 1회 진행 ▶ 최소 5개 이상의 다른 지역 또는 자치주의 기업 등록부에 등록된 1,000개 이상의 사회적 기업 회원으로 협회 활용 가능 ▶ 사회적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의 형식, 내용 및 방식과 수수료가 정해져 있음
스페인	▶ 19세기부터 '사회적경제'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기 시작 ▶ 1978년 제정된 스페인 헌법 제129조 제2항에 협동조합 규정 ▶ 1992년 사회적경제기업연합(CEPES) 결성 ▶ 2007년 사회통합기업법(44/2007) 제정 ▶ 2011년 사회적 경제에 관한 법률(5/2011) 제정됨	▶ 2023년 기준 스페인 사회적경제기업은 약 43,192개 ▶ GDP의 10%를 차지, 직간접적 고용 창출 효과는 2,184,234명 ▶ 사회적경제 관련 인구는 약 21,625,063명 ▶ 사회적기업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음	▶ 중앙정부와 사회적경제 간의 협력, 조정 및 의사소통을 추구하는 기관인 사회적경제 진흥위원회가 있음
룩셈부르크	▶ 1970년대 후반 국가가 제공해야 할 사회 서비스 관련 복지 운동이 등장 ▶ 2009년 유럽최초로 연대기반경제 전담 부서를 설치 ▶ 2013년룩셈부르크 사회연대경제연합(ULESS)이 설립됨 ▶ 2016년 사회적임팩트기업(SIS)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법률 제정	▶ 2020년 기준 사회적경제기업 2,135개 ▶ 사회적경제가 GNP의 0.8%이며 전체 고용의 4%를 차지 ▶ 2019년 7월 기준 31개 사회적임팩트기업 등록	▶ 노동고용사회연대경제부장관은 사회적경제 부문의 대표와 하나 이상의 연례 협약을 체결해야 함.

국가	사회적기업 개요		
	사회적경제 맥락	사회적기업 현황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벨기에	▶ 19세기 중반 협동조합이 등장하며 농업, 제약, 소매점, 은행 및 보험 등의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발달 ▶ 협동조합은 1873년에 공식적으로 인정(합법화) ▶ 1955년에 설립된 전국협동조합협의회(CNC)의 '인증' 절차를 통해 협동조합 인정(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협동조합은 수백 개) ▶ 2018년 브뤼셀-수도권지역(Brussels-Capital Region)에서는 일정 기준을 준수하는 모든 유형의 법인에게 사회적기업 지위를 부여하는 사회적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왈룬(Walloon)지방에서는 2008년 왈룬지방정부의 '사회경제기본법' 제정	▶ 2013년 기준 16,710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367,664을 고용 ▶ 전체 기업의 7.5%, 민간 고용의 16.6%, 전체 고용(민간 및 공공)의 11.8%를 차지 ▶ 사회적 목적 기업은 대략 400여개	▶ 벨기에 왈룬(Walloon)지방에서는 1986년 사회적 대화기구로 '왈룬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
그리스	▶ 1914년 협동조합 법 제정 ▶ 그리스 헌법 제12조에 협동조합에 대해 규정 ▶ 2011년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이 정신 및 기타 조항에 관한 법률' 제정 ▶ 2016년 사회연대경제법 제정	▶ 2011년 이전 6만여개의 사회적경제기업 존재 ▶ 2011년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이 정신 및 기타 조항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사회적 경제 단체의 등록을 제한하여 2015년에는 907개 단체만 등록 ▶ 2019년 6월 사회연대경제 등록센터에 등록된 법인은 1,464개, 평균 고용은 17.7명	▶ 최소 10개 이상의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모여 '사회연대경제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음. ▶ 노동·사회보장 및 사회연대부 내에 '사회연대경제 국가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사회연대경제 조정위원회'를 설치함. 또한 사회적 경제를 담당하는 장관 직속의 사회연대경제 특별사무국이 설치
영국	▶ 1793년 우애조합법 제정으로 우애(공제)조합 활성화 ▶ 1852년 우애조합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산업공제조합법 제정 ▶ 1980년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 등장 ▶ 2005년 공동체이익회사(CIC)법 제정으로 비영리 기관에 상법상 지위 부여, 주식발행, 수익배분 부분 허용, 지역 투자유치 지원 ▶ 2010년 빅 소사이어티 정책으로 지방분권과 사회적기업 연계	▶ 영국 DCMS부서 기준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19년 456,418개이며, 유급근로자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은 131,290개 ▶ 개인 유한책임회사가 48.6% > 보증책임회사 13.8% > 개인기업 12.6% 공동체 이익회사는 9.5%(26,000개/2022년 기준) ▶ EU 기준의 사회적기업은 30,753개(2017년)	▶ 사회적기업 인증체계는 없으며 CIC만 감독국 심사를 통해 등록 ▶ 감독국은 '지역사회 및 사회 전반의 이익 추구'를 평가 ▶ CIC는 연례 보고서를 매년 제출 ▶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은 별도로 없으며, 공공조달 관련 계획 및 실행을 지원하는 크라운 커머셜 서비스(CCS)가 유일 ▶ 민간의 지원생태계가 활성화

국가	사회적기업 개요		
	사회적경제 맥락	사회적기업 현황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덴마크	▶ 1960년대 복지국가 등장으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기업에 관심 ▶ 시민사회에 대해 공공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내 사회적기업 설립 활성화 ▶ 2000년 이후, 사회적기업이 대중화되면서 공공지원기관 설립 ▶ 2014년 '등록 사회적기업에 관한 법률' 제정	▶ 사회적기업 등록제도(RSV)에 등록된 사회적기업은 798개(2021년) ▶ RSV 등록요건은 5가지로 사회적목적, 상업활동, 독립성, 포용적 거버넌스, 이익의 사회적 관리(최대 배당 35%) ▶ RSV로 등록하면, 사회적기업 명칭 사용 및 기금 모금 가능, 세제혜택 공공조달 참여, 시범사업 참여 및 임대료 할인 가능	▶ 2015년까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국가성장지원센터 및 위원회가 설립되어 공공지원체계가 구축됨 ▶ 2015년 이후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은 거의 사라졌으며, 각 지자체별로 지원 정책 마련 중
멕시코	▶ 1920년 혁명 이후, 마을의 토지 공동소유조직인 에히도(ejidos)가 형성되면서 협동조합 활성화 ▶ 1980년대 노동자 인수기업이 등장하면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 2009년, 연방헌법에 사회적경제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2012년 사회연대경제법을 통과시키면서 정책화	▶ 2021년 기준, 멕시코 사회적경제 조직은 60,943개로 추정 ▶ 사회연대경제법에 사회적경제조직 유형으로 6가지를 규정하였으며, 그 중 에히도(ejidos)가 가장 많은 비중(29,000개)으로 추정 ▶ GDP의 1.22% 규모, 전체 고용 대비 3.23%	▶ 국립사회적경제연구원(INAES)가 사회적경제 전반을 지원 ▶ 지역 연합인 NODESS는 지자체-대학-사회적경제 조직으로 구성되어 전달체계의 역할을 수행하며 교육, 홍보, 경영지원 등 담당 ▶ '2021-2024 사회적경제 진흥 프로그램'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 기준 진흥 프로그램 예산은 약 510억원 규모
에콰도르	▶ 1937년, 민중연대경제(PSE) 정책 시행 및 협동조합법 제정 ▶ 2008년, 세계 최초로 헌법에 민중연대경제 명문화하며 다양한 형태의 경제체제를 규정 ▶ 2012년 민중연대경제 및 연대금융법 제정	▶ 2023년 기준, 민중연대경제조직은 16,193개, 54만명 종사 ▶ 법에 명시된 4가지 조직유형 중 협회가 83.2%로 가장 높은 비중 ▶ 민중연대경제는 전체 고용의 64%, GDP의 13% 규모 ▶ 연대금융기관은 410개, 자산은 약 260억 달러(2023년 기준)	▶ 민중연대경제법에는 5개의 지원기관을 명시 ▶ 민중연대경제 감독원은 전체를 총괄하며, 연구소는 정책 및 프로젝트 실행 역할. 그 외 금융공단(금융서비스), 위원회(정책 조정 등)가 있음 ▶ 민중연대경제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등록부에 등록 필요
퀘벡주	▶ 1980년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노동-시민사회-협동조합 진영이 대규모 기금을 조성하여 노협 등에 투자하며 사회적경제 대두 ▶ 1995년 지역사회에서 사회서비스 제공, 빈곤 퇴치를 위한 대규모 시위를 계기로 사회적경제 공론화 ▶ 이후 지역 커뮤니티와 사회운동이 중심이된 사회적경제 모델 정립 ▶ 2013년 사회적경제법 제정으로 정책 고도화	▶ 2023년 기준, 사회적경제 기업은 11,200개 이상 매출규모는 약 480억 달러, 고용은 22만명 ▶ 비영리 조직이 75%로 가장 많으며, 협동조합, 상호금융 순 ▶ 65%는 직원 10명 미만이며, 64%는 매출액 50만 달러 미만 ▶ 사회적경제법에는 조직형태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6가지 원칙만 규정	▶ 경제혁신부 장관이 상티에와 협동조합위원회와 협의하여 정책 개발 ▶ 5년마다 실행계획 수립 의무화(법 제10조) ▶ 22개 지역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상담, 지원, 교육을 담당하고, 상티에는 정책 수립 및 생태계 발전 견인(주정부는 각 네트워크에 보조금 지급) ▶ 상호금융, 연대기금 등 금융 지원이 체계화 ▶ '2020-2025 사회적경제 전략계획'에 1억3천7백만달러 예산 편성

구 분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재정 지원 및 직접 지원	[프랑스] ESUS로 인증 받을 경우 연대임금저축기금에서 기금 총액의 10%를 해당 기업에 투자. ESUS는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대상 [이탈리아] B타입의 노동통합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취약계층 사회보험료 감면 [스페인] 코로나19 이후 사회적경제의 핵심 분야에서 공적 보조금이나 분야별로 준비금을 조성하여 지원. 고용통합기업이 취약계층을 채용할 경우, 해당 종업원의 사회보험료 사업장부담금을 감액 받고 인건비 보조금도 받을 수 있음 [룩셈부르크] 2021년도에는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 및 사회적임팩트기업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벨기에] 왈론지방의 경우 2004년 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컨설팅기관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왈론지방정부로부터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사회적경제기업 경영 지원을 함 [그리스] 사회연대경제 주체는 사회적경제 기금, 국가 기업가 정신 및 개발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가 정신 지원 프로그램과 고용 지원을 위한 노동고용청(O.A.E.E.D.)의 프로그램에 포함 될 수 있음. 사회적경제기업의 실직자는 OAD의 실업 등록부에 실업자로 등록되어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음 [영국] 사회적기업이 활용하는 가장 큰 보조금은 복권 기금이며, 민간 단위(UnLtd 재단, 자선단체) 및 공동 기금 프로그램에서 보조금 제공 [덴마크] 2016년까지 덴마크 보험재단이 설립한 사회적 자본기금에서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 대상 보조금 지급. 그 외, 각 지자체별 정부 기금 지원을 통해 자체 프로그램 진행 [멕시코] 법률에 근거한 지원제도는 없으며, 4년 단위로 수립하는 진흥계획에 따라 지원 - 소외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에 보조금 지급, 프로젝트 개발에 최대 1.5억원 지급 등 [체코] 법률에 근거한 지원제도는 없으며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전략계획에 따라 지원 '2020-2025 사회적경제 전략계획' 내 사회적경제기업간 협력 프로젝트, 네트워크 지원, 기업 인수 프로젝트, 자산화, 학생 취창업 지원 등 8개 프로젝트에서 사회적경제기업 보조금 지원
판로 지원	[프랑스] 2014년에 제정된 사회연대경제법 제13조 제1항에서 연간 총 구매액이 9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지방 당국이 사회적 책임 구매 제도를 도입하도록 장려했으나 2018년 11월 법이 개정되며 이 조항이 삭제되어 2019년 4월 1일부터는 적용되고 있지 않음. 프랑스 낭트에서는 2001년부터 책임 있는 공공조달(RPP)을 시행 [스페인] 2018년 3월 공공부문계약법이 개정되어 제1조에서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공공조달 접근을 촉진한다”를 규정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에서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00% 지속가능한공공조달(SPP)을 목표로 설정 [그리스] 유한책임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조달사업에서 우선권 보유 [영국] 2012년 공공서비스(사회적가치)법이 제정되면서, 잉글랜드 및 웨일즈 일부 기관의 조달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 [에콰도르] 민중연대경제법에 공공조달계약시 민중연대경제 단체를 우선시할 것을 규정하고, 시정부가 지역 공동체조직의 결성, 위탁 등을 장려하도록 명시 민간영역에서도 소매업체가 공급업체의 최소 15%를 중소기업 또는 민중연대경제 업체로 유지하도록 규정 [체코] '2020-2025 사회적경제 전략계획' 내 공공구매 담당자 인식제고(교육, 홍보, 네트워크) 명시, 몬트리올 사회적경제위원회는 'Social Economy, I Buy' 캠페인으로 공공기관 및 대기업 연계

구 분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경영 지원	[스페인] ESF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차별 위험이 높은 집단의 고용 촉진 및 코로나 위기 지원 프로그램으로 노동자 소유 전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진행 [멕시코] 2019년 사회적경제 역량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개별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최대 750만원 보조금 지급 [에콰도르] 민중연대경제법에 따라 교육훈련,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보완적 성격의 지불수단 이용 권리, 홍보와 사회보장 등의 지원제도 명시 [퀘벡] '2020-2025 사회적경제 전략계획' 내 외부 컨설팅을 통한 기술 습득 지원 프로그램 명시. 그 외 경영지원은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상시 지원
금융 지원	[프랑스] 투자자가 Madelin (IR-PME) 제도를 통해 세금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음. 사회적영향계약(CIS)을 통해 민간 투자자가 혁신적인 사회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성공할 경우에만 공공 기관에서 이를 상환하도록 함 [이탈리아] 2015년 조성된 기업 순환 기금(FRI)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지원(총 2억 2,300만 유로 배정)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2000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도 활용 가능 연대기금(Fondi Mutualistici)의 경우 1992년에 조성되어 협동조합 지원 및 시스템 전반의 발전 도모. 연대기금회원으로 가입한 협동조합과 컨소시엄은 매년 순익의 3%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출연 [스페인] 코로나19 이후 윤리은행(사회적경제계열 금융 기관)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위한 대출을 촉진 [룩셈부르크] 일부 은행은 사회적 기업가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맞춤형 은행 서비스를 개발. 2017년 룩셈부르크 신용투자협회(SNCI)와 양해각서를 체결. [벨기에] 2014년 11월 브뤼셀에서 최초의 소셜 임팩트 본드를 마련 [영국] 사회투자 감세제도를 통해 공동체이익회사 등에게 투자할 경우 소득세 납부액에서 투자비용의 30% 공제, 굿 파이낸스 플랫폼 개설하여 사회적기업과 투자자 연결 지원 [덴마크] 메르쿠르 협동조합 은행 등 윤리적 은행에서 사회적 목표가 선명한 기업에게 자금 지원 [멕시코] 2019년 사회적금융기관 역량강화, 리스크 관리, 교육 등을 위해 사회적금융기관에 최대 1억 5천만원 지원 [에콰도르] 민중연대금융공단이 8년간 민중연대조직 및 연대금융기관에 9조 2천억 달러 투자. 그 외 연대금융기관의 역량 강화 및 2차 대출 지원 [퀘벡] '2020-2025 사회적경제 전략계획' 내 사회적경제 자산화 프로그램(대출 및 기부금), 금융상품 개발 등 지원. 그 외 퀘벡 투자청, 연대기금,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금융 지원 활성화

구 분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세계 혜택 및 기타	[프랑스] 배당을 제한하고 이윤을 재투자하는 사회연대경제 주체에게 소득세 미과세, 사회보험료 및 기타 인건비 지출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자산동결 처리된 공익협동조합(SCIC)의 수익에는 과세하지 않으며 SCIC의 부가가치세율은 실제로 수행하는 활동에 따라 결정 지역지원계획(Dispositif Local d'Accompagnement, DLA)은 2002년에 창성되어 2014년 사회연대경제법에 따라 사회연대경제의 고용주에게 재무관리 지원을 비롯한 컨설팅 지원 [이탈리아] 연간 순이익의 3%를 초과하지 않는 지분을 사회적기업의 촉진 및 개발 관련 기금에 할당할 경우 소득세 공제 사회적기업의 이익 및 잉여금이 사회적 목적 추구 및 자산의 증가에 배분될 경우 면세 혜택, 사회보험료 및 기타 인건비 지출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A 유형 사회적협동조합은 부가가치세 5% 적용 [스페인] 사회보험료 및 기타 인건비 지출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비영리단체로 인정받은 사회적이니셔티브협동조합의 최고 소득세율을 10%로 제한, 사업활동세의 95%를 감액 받음. [룩셈부르크] 2018년에 법률을 개정하며 비영리단체와 재단에게만 주어졌던 세금감면과 같은 혜택을 사회적임팩트기업에게 제공 2016년 노동고용사회연대경제부와 사회연대경제연합이 최초의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터인 6zero1을 공동으로 출범, 2018년 사회적 경제 및 혁신 센터(MeSIS) 개설 [벨기에] 배당을 제한하고 이윤을 재투자하는 사회연대경제 주체에게 소득세 미과세 사회연대경제 주체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얻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종사자 사회보장세 면제 사회적기업 창업 및 컨설팅 기능을 2013년 설립된 사회혁신팩토리에 통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기업과 사회혁신활동의 진흥, 지도 및 지원 왈롱지방의 경우 2004년 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컨설팅기관을 인증하여 창업지원, 신규일자리 창출, 창업 이후 최장 2년까지 사후관리, 사업계획서 검토, 홍보활동 지원, 재정확보 지원 등의 역할 수행 [그리스] 유한책임 사회적협동조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지방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 [영국] CLG(보증제한회사)형태의 사회적기업은 지방 납부 사업세 80% 감면 혜택 [덴마크] 공익단체가 비영리활동 및 사회적 목적 추구를 위한 경제활동의 경우 법인세 감면, 공익법인으로 인정된 단체 및 사회적기업 부가가치세율 완화(19%→7%) [멕시코] 비영리단체는 소득세 면제 및 기부금에 부가가치세 면제. 멕시코시티는 인권증진, 취약계층 보호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단체의 재산세 100% 공제 [에콰도르] 민중연대경제 단체가 기업의 목적에 부합하여 조합원과 함께 수행하는 행위에 대해 세금 면제 지자체는 민중연대경제 단체의 활성화 프로젝트를 계획해야 하며, 결사를 장려하고, 행정적 장애를 제거할 것, 경제통합체(체인 등) 구성 촉진 등을 법으로 규정 [웨일스] 협동조합 투자계획에 따라 우선주를 취득한 조합원과 노동자에게 세계 혜택. 우선주 형태로 배당금을 받은 조합원이 주식을 처분할 때 까지 과세 이연

구 분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사회적가치	[프랑스] 2011년 프랑스 사회연대경제위원회(CSESS)의 의뢰로 사회적 영향 측정과 관련한 보고서 작성 [이탈리아]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영향을 평가할 목적으로 수행된 활동을 담은 “사회적 결산서(bilancio sociale)”제출 의무 2019년 이탈리아 노동사회정책부는 제3섹터 주체가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사회적 영향 평가 시행을 위한 지침을 채택. 이탈리아 토리노의 역량 센터는 사회적 임팩트 측정과 확산을 위한 평가 활동 및 문화 허브로서 기능 [스페인] 2018년 공공계약법 개정으로 공공조달계약에서 사회적 조항을 사용하며, 사회·문화·보건서비스 조달절차에서 공익 추구 기업만 입찰 허용 [룩셈부르크] 사회적임팩트기업의 경우 사회적경제로서 목적을 정의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제공해야 인가 가능 기업은 지표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목적 달성 여부와 방법, 정도 등을 평가하고, 달성 현황과 예측치를 임팩트 리포트를 통해 보고 의무 [벨기에] 플랑드르 혁신 및 기업가정신 기관이 2016년에 사회혁신팩토리가 개발한 임팩트 마법사 도구를 홍보했음 사회적기업은 조직의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연례 보고서 발행 의무 벨기에 왈로니아의 사회적 임팩트 개발 및 평가(DENIS)프로젝트는 왈로니아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회복을 위한 ‘Get up Wallonia’ 이니셔티브의 일부로 시작 [그리스] 아테네 시가 2014년부터 사회적 기업을 위한 방법론과 평가 도구를 채택. 노동사회보장부는 ‘사회적 영향력 측정 도구’를 도입하여 사회연대경제 일반 등록소에 등록된 사회연대경제 기업은 매년 이 도구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7가지 사회적 가치 원칙을 기반으로 함. [영국] 중앙정부(Social Value Model)와 지방정부(National Themes, Outcomes and Measures, TOM)가 각각 다른 모델의 사회적가치 프레임워크를 공공입찰에서 활용 중앙정부는 질적 평가에 중점을 두며, 지방정부는 양적·질적 사회적가치 측정 [멕시코] 사회적경제 진흥 프로그램을 수립하면서, 국립사회적경제연구소(INAES)가 임팩트 모니터링을 진행하도록 규정. 각 세부과제별 지표를 설정하여 임팩트 측정 [캐나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하여 임팩트 측정에 대한 공동접근법(Common approach to Impact Measurement) 개발 진행 중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국제금융이슈(2014.12). 유럽투자전략기금, EU의 경제난국 탈출의 묘수가 될 것인가?
- 김창진, ‘캐나다 퀘벡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시사점’(2013), 「협동조합네트워크」 통권 60호, 사단법인 한국협동조합연구소
- 더퍼블릭뉴스(2015). 벨기에 왈롱지방의 ‘레뚜르니에르’와 ‘테르’, 제도 뛰어넘은 주민중심 주거·일자리복지 <https://www.thepub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00>
- 더퍼블릭뉴스 (2020.5.4). [정책-외국정책사례] 유럽연합의 중소기업지원정책. 더퍼블릭뉴스 <https://www.thepub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61>
- 라이프인(2020.5.20) 코로나19 위기에 스페인 사회적경제 분야의 대응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0439>
- 서진석(2019.6.22). 이탈리아 협동조합(6) : 전국조직 ‘레가쿰’과 연대기금 <https://m.blog.naver.com/campsis/221568119302>
- 신재민(2021). 외국의 사회적경제법과 정부 정책- 프랑스 사회연대경제법과 정책을 중심으로 -.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연구 포럼
- 이미옥(2021). 사회적 경제를 넘어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힘, 퀘벡주 사회적 금융의 현황과 특징. 사회가치연대기금
- 이철선, 박세경, 권소일. (201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 3: 사회서비스 산업-제3섹터-고용창출 연계모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철선 외 (2022). 복지국가와 사회적경제의 조응형태에 대한 국제 비교연구-사회적경제조직 유형에 따른 정부 지원방식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용일(2018), ‘캐나다 퀘벡 주의 사회적경제법과 협동조합법 주요내용 분석 및 시사점’, 최신외국법제정보 2018 제6호, 한국법제연구원
- 조상미, 김진숙, 강철희 (2011). 사회적 기업 정책특징 비교분석 연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8(2), 1-38
- 조희문. (2020). 브라질의 사회적 연대적 경제 - 이론과 실제. 중남미연구, 39(3), 63-100.
- 주종택. (2017). 멕시코 농촌 사회의 공유자원과 사회적 기업. 이베로아메리카 연구, 28(1), 117-156.
- 한국법제연구원(2021), ‘사회적경제 법령집’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3.11). 글로벌 이슈리포트 Zoom In. (원문: OECD (2023), Policy Guide on Social Impact Measurement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LEED), OECD Publishing, Paris)
- 홍선기, 김태환(2015) ‘캐나다 퀘벡의 Social Economy Act와 한국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비교’, 「법학논총」 Vol.32 No2.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해외문헌

- Λιαργκόβας, Π., & Αποστολόπουλος, Ν. (2020). Κοινωνική Οικονομία στην Ελλάδα: Συγκλίσεις και Αποκλίσεις με την ΕΕ.
- A. Michael Andrews (2015) Survey of Co-operative Capital: Unprecedented List of Co-operative capital Tools(번역협동조합 역).
- Adam, S. (2019). Legal provisions for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actors. the case of law 4430/2016 in Greece. *International Journal of Cooperative Law*, 2, 97-110.
- Avise(2020). Mode d'emploi : Évaluer l'impact social
- Barco, S., R. Bodini, M. Roy, and G. Salavatori(2019). Financial mechanisms for innovativ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ecosystems.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Big Society Capital (2022) Ten Years of Investing for Impact
- Caitlin McMullin (2021), 'Financial mechanisms for innovativ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ecosystems: The case of Quebec', ILO
- Carola Conde Bonfil (2019), 'A new public policy to promote Mexico's social economy?', 7th EMES International Research Conference on Social Enterprise
- CICOPA(2013). Promoting cooperatives and the Social Economy in Greece
-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2021.4). Social Enterprise: Market Trends 2019, Centre for Enterprise and Economic Development Research
-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2021), 'ACUERDO por el que se aprueba el Programa de Fomento a la Economía Social 2021-2024'
- Dufour, B. (2016, September). Social impact measurement and public management: how social innovation challenges the policy evaluation paradigm - the case of France. In 8th International Social Innovation Research Conference:" Social Innovation in the 21st Century: Beyond Welfare Capitalism?".
- European Commission (2019) Social enterprises and their ecosystems in Europe. Updated country report: Denmark. Authors: Lars Hulgård and Lisa Chodorkoff.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European Commission (2019) Social enterprises and their ecosystems in Europe. Updated country report: United Kingdom. Fergus Lyon, Bianca Stumbitz, Ian Vickers.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European Commission (2020) Buying Social – a guide to taking account of social considerations in public procurement.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European Commission (2020) Social enterprises and their ecosystems in Europe. Updated country report: Italy. Author: Carlo Borzaga.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European Commission (2020) Social enterprises and their ecosystems in Europe. Updated country report: Luxembourg. Authors: David Hiez and Francesco Sarracino.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Gouvernement du Québec. (2020). La force du collectif: Plan d'action gouvernemental en économie sociale 2020-2025. Québec.
- Huybrechts, B. (2016). La empresa social en Bélgica: diversidad de fuentes, modelos y campos. *Revista de la Academia*, 21.
- Levesque, Benoit(2016),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and Social Entrepreneurs: Towards Which New

- Ecosystem?', *Papers in Political Economy*
- Lilian Hernández Nolasco, María Soledad Ramírez Flores, (2022), 'El fomento a la Economía Social y Solidaria en México', *Otra Economía*, vol. 15, n. 27: 103-122, enero- junio 2022.
- Nasioulas, I. (2012). Social Cooperatives in Greece Introducing New Forms of Social Economy and Entrepreneurship, *International Review of Social Research*, 2(2), 151-171.
- OECD (2022), *Designing Legal Frameworks for Social Enterprises: Practical Guidance for Policy Makers,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LEED)*,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23), *Policy Guide on Legal Frameworks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LEED)*, OECD Publishing, Paris
- Rijpens, J., & Mertens de Wilmars, S. (2015). *Baromètre des Entreprises Sociales en Belgique*-Edition 2015.
- RRick Schmitz(2022). *Regards 4/22 : Panorama en chiffres de l'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Statec
- Samuel Barco Serrano¹, Riccardo Bodini, Michael Roy, Gianluca Salvatori(2019), 'Financial Mechanisms for Innovativ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Ecosystems', ILO
- Sarracino, F. & Peroni, C.(2014) *Assess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in Luxembourg*.
- The Office of the Regulator of Community Interest Companies, 'Regulator of Community Interest Companies Annual Report 2021/22'
- X. Hubert Rioux (2020)*Portrait 2020 de la finance responsable au Québec*, p.29
- 타나카 나츠코(2014). 이탈리아 사회적경제의 지역전개. 아르케.(이성조 역)

